202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CONTENTS

인사말

제 I 장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개

1. 설립 목적 08
2. 조직 및 인력 10
3. 2023년 LIMAC 실적 및 성과 요약 12

제 II 장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실적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14
2.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32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34
3. 센터연구과제 57
4. 조사관련 사업 62
5. 조사지원 사업 67

제 III 장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성과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72
2. 이력관리 백서 92
3. 내부 지원사업 효과 94

제 IV 장 부록

1. 기관 주요연혁 100
2.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일정 102
3. 주요행사 (2023년 기준) 103

센터의 운영목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제 구현"

센터의 업무범위

주요업무01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주요업무02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 운영 지원

주요업무03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주요업무04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교육, 투자사업 **이력관리** 등

주요업무05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주요업무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주요업무07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4항)

주요업무08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 조사

주요업무0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인 사 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법정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성과 증진을 통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104건의 투자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20건을 반려, 자진 철회를 유도하여 13조 301억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이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의뢰된 48건의 사업중 26건만이 통과하여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방지함으로써 4조 8,8277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의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84건으로 목표 대비 14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는 목표치의 174%를 초과 달성하는 174건을 수행하였고, 우리 센터의 핵심 미션인 객관적이고 충실한 조사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과제점수 92.4점 이상을 획득하는 등 학계 전문가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3년은 변모하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긍극적으로는 국가정책과 제도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외연확장과 대외위상 제고에 있어서도 뜻깊은 한 해였다 자평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하였으며, 우발채무 관리 자문단에 적극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면제 협의를 요청한 사업에 대해 면제여부 적정성 사전검토를 2024년부터 우리 센터의 신규업무로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센터가 축적한 역량과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의 내실있는 수행을 목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실무 공무원 대상 교육도 6회로 확대하여 439명의 공무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TOM(탐)나는 컨설팅 역시 173건을 제공하여 전년도 103건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만족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국가 지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서, 그리고 이 분야의 선도 기관으로서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대한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하계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직무대행

송 지 영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AC

2023 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PART

I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개

설립 목적

조직 및 인력

2023년 LIMAC 실적 및 성과 요약

01 설립 목적

설립 목적

- 500억원 이상 지방재정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총액이 전년도 자본상태표상 자본금의 5% 이상인 경우, 출연기관에 출자하려는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10%인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설립 배경

-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 기관을 직접 선정함으로 인한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 상실
- 공신력 있는 타당성조사 기준 및 방법론 미비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미흡
-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한 타당성조사 전문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 제시(감사원 감사연구원,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실태분석』, 2012.12)

설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2호)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신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년-제27호)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04호)

01

센터의 발전사

LIMAC 발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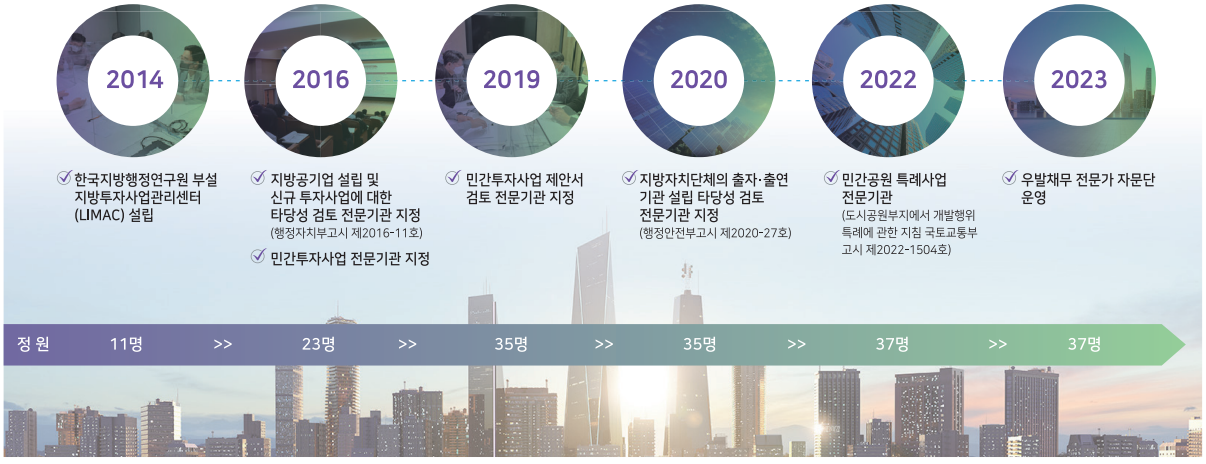

센터의 운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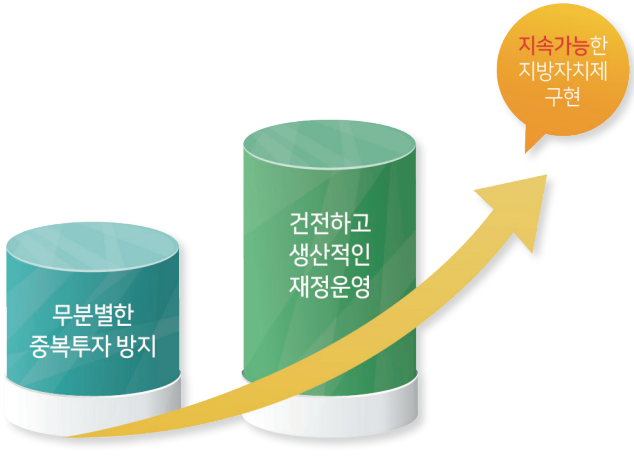

02 조직 및 인력

◆ **LIMAC 센터는 원장 직속 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조사 전문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 분야에 따라 3부 체계로 구성됨**

○ 3부 체제 : 기획총괄부, 재정투자조사부, 재정투자평가부

◆ **고객니즈 변화(행정안전부)에 따른 고유업무 추가 및 업무 범위의 확대(사전검토)로 현행 조직체계 내에서 부서별 업무 추가됨**

○ 기 획 총 괄 부 :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수송 및 교통부문 타당성(재)조사 관리, 사전검토, 교육 및 컨설팅, 센터 운영지원 및 대외협력

○ 재정투자조사부 : 행안부&교육부 공동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괄 관리, 민자적격성 조사, 자체타당성조사검토

○ 재정투자평가부 : 우발채무 지자체 컨설팅, 투자사업 이력관리, 문화·체육분야 타당성 (재)조사 관리

◇ LIMAC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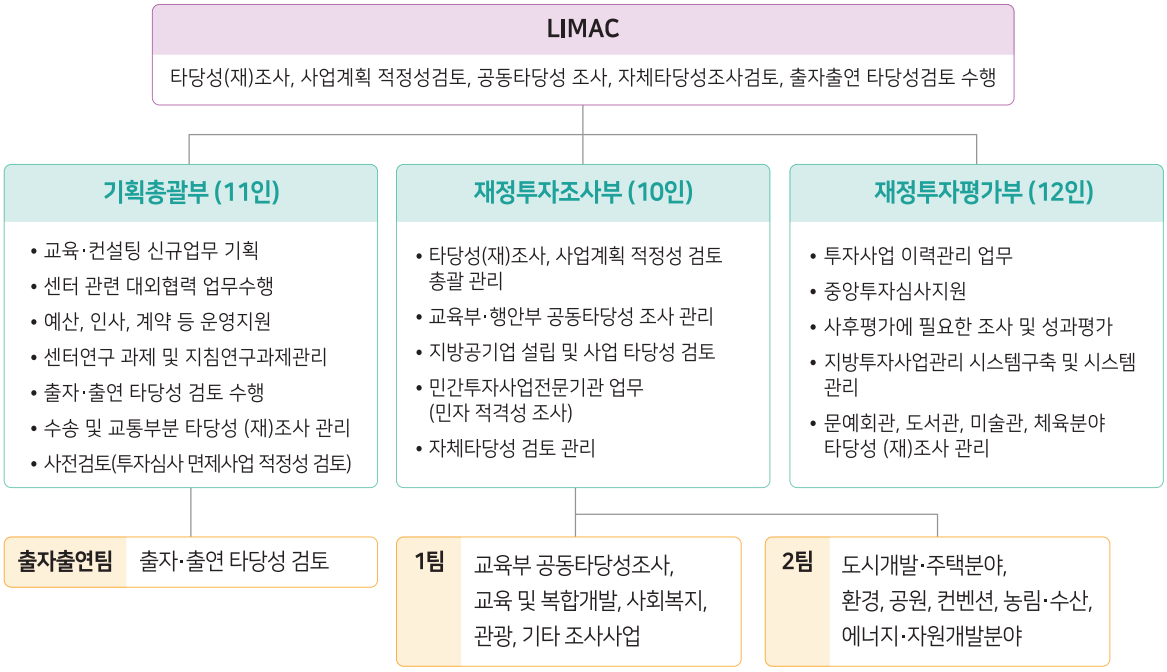

02

◆ LIMAC 센터의 인적자원으로는 2023년 12월 기준 연구직(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 12명, 투자분석직(전문위원·전문분석원·분석원) 20명, 행정직 3명 등 총 35명임

◇ LIMAC 센터의 연도별 정원·현원 현황(2023년 12월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센터	합계	35	21	35	25	35	25	37	25	37	31	37	35
	연구직	14	6	14	8	14	9	16	7	14	11	14	12
	투자분석직	18	13	18	15	18	14	18	15	20	17	20	20
	행정직	3	2	3	2	3	2	3	3	3	3	3	3

◆ LIMAC은 2017년부터 타당성조사 과제 등 연구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25인에서 2023년 기준 48명으로 분야별 자문위원 풀을 확대하면서 내실을 갖춰 운영 중임

03 2023년 LIMAC 실적 및 성과 요약

◆ **2023년 LIMAC의 타당성조사 실적은 2022년 49건(약정건수) 대비 84건으로 수행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자체타당성조사 검토는 2022년 130건 대비 증가한 174건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자체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비 적정성'과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유형에 '규모 적정성 검토' 유형을 추가하여 2023-3차부터 수행하였음

◇ 2022/2023년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비교

차수	2022년		⇒	2023년	
	의뢰건수(건)	약정건수(건)		의뢰건수(건)	약정건수(건)
1	20	15		25	21
2	17	11		29	21
3	11	5		19	17
4	23	15		31	25
수시	4	3		-	-
수행 금액(억원)	66.9 억원			114.41억원	
합계	75	49		104	84

◇ 2022/2023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현황 비교

수행건수(건)	2022년						⇒	2023년				
	1차	2차	3차	4차	수시	계		1차	2차	3차	4차	계
사업비 적정성	20	13	15	15	5	68		20	21	21	36	98
자체타당성조사	23	15	8	14	2	62		20	17	16	18	71
규모 적정성	-							-		3	2	5
합계	43	28	23	29	7	130		40	38	40	96	174

◆ **LIMAC 중기발전 수정계획('24년~'28년) 수립**

○ 중기발전계획은 매년 환경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중

○ 23년에는 최초 수립한 중기발전계획('23년~'27년) 달성도 점검 및 미흡사항 발굴 등을 바탕으로 개선사항 반영

○ 수정 중기발전계획 TF('23.8~12) >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 TF 점검회의 > TF 결과보고서 제출('23.12)

중기발전계획 수정TF구성
- 직급별 참여희망자로 구성된 TF 구성
- 구성원 자발적 참여를 통한 bottom-up 추진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 Rolling plan 수행 및 달성 여부 무기명 의견수렴
- 항목별 구성원 자율점검회의 진행

TF 점검회의 수행
- Rolling plan 주제별 점검 결과 정리
- 기존 계획 보완 사항 및 개선 방안 점검

TF 결과보고서 제출
- 중기발전계획 수정방안 정리
- Rolling plan 재구성

PART

II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실적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센터연구과제

조사관련 사업

조사지원 사업

0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가. 2023년 타당성조사 약정 실적

◆ 2023년도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총 104건이 의뢰되었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84건이 약정(80.8%)되었음

■ 2023년 타당성조사 약정률 현황

구분	차수	의뢰건수(건)	약정건수(건)	약정률(%)
2023년	1	25	21	84.00%
	2	29	21	72.40%
	3	19	17	89.50%
	4	31	25	80.60%
합계		104	84	80.80%

• 주: 약정률=약정건수/의뢰건수(약정해지 건수 포함), 수행률=완료건수/약정건수

◆ 2023년 타당성조사 약정건수는 2023년 약정률은 80.8%로 전년(65.3%) 대비 15.5%p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강화(사업계획 충실성, 이해도 제고)에 따름

■ 2023년 타당성조사 수행률 현황

차수	2022년		⇒	2023년	
	의뢰건수(건)	약정건수(건)		의뢰건수(건)	약정건수(건)
1	20	15		25	21
2	17	11		29	21
3	11	5		19	17
4	23	15		31	25
수시	4	3		-	-
수행 금액(억원)	66.9억원			114.41억원	
합계	75	49		104	84

01

■ 2023년 타당성조사 약정 과제 실적

차수	시도	기초	사 업 명
1차	△△	본청	△△간선도로 재구조화사업
	■■	본청	■■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	□□군	●● □□군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본청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	○○시	○○시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	▽▽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
	△△	□□시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	●●시	●●시 ◇◇지구 나들목(IC) 설치사업
	●●	□□시	□□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	◇◇시	◇◇시 신안산선 ○○ 연장사업
	○○	▽▽시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	□□시	□□시 ◇◇ ▽▽▽▽~□□ ●●●● 도로개설사업
	◇◇	본청	◇◇ □□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	○○시	○○ ◇◇도서관 건립사업
	●●	□□시	(가칭)□□ △△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	본청	□□ ◇◇ ○○○ 해상교량 건설공사사업
	◇◇	●●시	●● □□△△2지구 도시개발사업
	△△	□□	△△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본청	□□ ●●●공원 조성사업
	●●	본청	●● ◇◇◇공원 조성사업
	■■	본청	■■ ▽▽공원 조성사업

01

차수	시도	기초	사 업 명
2차	△△	본청	■■간선도로(◇◇방면) 연결램프 확장
	●●	본청	▽▽북로 ▲▲권역 진입램프 설치
	□□	본청	◆◆◆◆로 확장
	○○	본청	○○○ 문화플라자 조성
	▼▼	광진구	△△동 주차장 복합개발
	■■	본청	◇◇◇ 유원지 ●●전망대 조성사업
	▽▽	본청	▲▲야구장 재건축 사업
	□□	◆◆시	○○○○~▼▼▼▼▼간 도로개설공사
	△△	■■시	◇◇◇철도 횡단도로 건설공사
	●●	본청	●●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	본청	▽▽ ▲▲-□□ 지방도 확포장공사
	◆◆	본청	◆◆ ○○-▼▼ 지방도 확포장공사
	△△	■■시	◇◇지하차도 개설공사
	●●	▽▽시	▲▲읍 도시계획도로(대로□-◆호) 도로개설공사
	○○	본청	지방도 ▼▼▼▼호선 △△~■■
	◇◇	본청	지방도 ●●●●호선 ▽▽~▲▲ 도로건설공사
	□□	◆◆시	○○○ 동물원 조성사업
	▼▼	본청	▼▼ 본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본청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본청	■■ 본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01

차수	시도	기초	사 업 명
3차	◇◇	본청	◇◇ ●●간선도로 지하화 연장구간 건설
	▽▽	본청	▽▽ ▲▲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	본청	□□ ◆◆로공원 정비사업
	○○	본청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	본청	△△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사업
	■■	◇◇구	■■ ◇◇구 ●●●●포레스트 조성사업
	▽▽	본청	▽▽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	본청	▲▲ 제2수목원
	□□	◆◆군	□□ ◆◆ ○○ ▼▼지구 도시개발사업
	△△	■■시	■■시 ◇◇읍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시	▽▽ ●●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	□□시	□□ ◆◆1지구 도시개발사업
	○○	본청	○○ 지방도▼▼▼호(△△-■■)확포장 공사
	◇◇	●●시	●●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3차)
	▲▲	□□시	□□역사 증개축사업
	◆◆	○○시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시	△△시 제2■■교 가설 사업

01

차수	시도	기초	사 업 명
4차	◇◇	본청	◇◇ ●●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사업
	▽▽	본청	▽▽ ▲▲▲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1구간)
	□□	본청	□□시 ◆◆ ○○○ 예술섬 조성사업
	▼▼	본청	▼▼시 △△△공원 재구조화 사업
	■■	본청	◇◇◇◇◇◇◇ ■■캠퍼스 조성사업
	●●	본청	●● ▽▽습지생태공원 확장 및 복원사업
	▲▲	□□시	▲▲ □□ 원도심 ◆◆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	▼▼시	○○ ▼▼ △△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	◇◇시	■■ ◇◇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	△△시	△△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시	■■■ ◇◇로(중로○-▼▼▼호) 확포장공사
	△△	■■시	■■ ◇◇4지구 도시개발사업
	○○	▼▼시	▼▼ △△지구 도시개발사업
	■■	◇◇시	◇◇ 해안변 공원 녹지화(●●2지구)조성사업
	▽▽	▲▲시	▲▲ 해안변 공원 녹지화(□□3지구)조성사업
	◆◆	○○시	◆◆ ○○ ▼▼근린공원 조성사업
	△△	■■군	■■군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	본청	◇◇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사업
	▼▼	본청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	■■시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연계건립사업
	◇◇	●●시	●● ▽▽▽▽▽항만 개발사업

나. 2023년 수행 완료 실적

◆ **지방투자사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타당성조사 중 2023년에 약정이 완료되어 종료된 과제는 총 60과제로 나타남**

■ 2023년 종료과제 실적

차수	사업명
2021-2차	□□ ○○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2022-1차	○○ △△ 복합문화거점 조성사업
2022-2차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2-2차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2-2차	○○ ◇◇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2022-2차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2-2차	◇◇ ○○(□□)지구 도시개발사업
2022-2차	○○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2022-2차	○○ ☆☆마을 주거지보전사업
2022-2차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2022-2차	○○ ◇◇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022-3차	○○○항 ◇◇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 2단계) 정비사업
2022-3차	◇◇ ○○전용경기장 건립사업
2022-3차	○○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단계 체육시설 건립사업
2022-3차	◇◇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2022-3차	GTX○○○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2022-3차(수시)	◇◇지식○○타운역(가칭) 신설사업
2022-4차	○○ ◇◇·△△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2022-4차	△△ ○○ 군부대 이전 사업

01

차수	사업명
2022-4차	△△ ○○차량기지 이전 사업
2022-4차	☆☆ ○○~○○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2-4차	☆☆ 지방도◇◇◇◇호선 ○○~○○ 도로개설 사업
2022-4차	○○ ○○천 복개철거 복원사업
2022-4차	○○ △△공원 조성사업
2022-4차	○○ ◇◇구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사업
2022-4차	☆☆ ○○ ◇◇◇◇ 창의☆☆파크 □, □
2022-4차	□□ ○○ ~ ○○간 연도교 개설사업
2022-4차	□□□ △△삼거리~○○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22-4차	□□ ○○ △△지구 도시개발사업
2022-4차	☆☆ 지방도◇◇◇◇호선 ○○~○○ 도로개설 사업
2022-4차(수시)	□□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2022-4차(수시)	△△의료원 외래진료센터 구축 사업
2023-1차	○○시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2023-1차	△△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2023-1차	△△시 ◇◇지구 나들목(IC) 설치사업
2023-1차	□□ ○○마을~□□ ○○마을 도로개설사업
2023-1차	◇◇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2023-1차	○○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조성
2023-1차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3-1차	아트센터 □□ 2단계 건립사업
2023-1차	☆☆ ○○도서관 건립
2023-1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01

차수	사업명
2023-1차	(가칭)○○ □□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2023-1차	○○ 대공원 케이블카 민간투자사업
2023-1차	◇◇간선도로 재구조화
2023-1차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23-1차	□□ ◇◇도 해상교량 건설공사사업
2023-1차	◇◇◇선 □□연장사업
2023-1차	○○○공원 조성사업
2023-1차	○○○공원 조성사업
2023-1차	△△ ○○공원 조성사업
2023-1차	□□ ○○◇◇2지구 도시개발사업
2023-2차	☆☆도 신청사 건립사업
2023-2차	◇◇간선도로(○○방면) 연결램프 확장사업
2023-2차	◇◇북로 ☆☆권역 진입램프 설치사업
2023-2차	○○선철도 횡단도로 건설공사
2023-2차	○○△△~○○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
2023-2차	○○ ~ ○○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3-2차	○○ ~ ○○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3-2차	○○지하차도 개설공사

01

▶ □□□ △△삼거리~○○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1966년 도시계획시설 도로(6차로)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의 사업추진목적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결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사업규모 : L=7.465㎞, B=35m (왕복6차로 확장)
  - 교량 2개소, 교차로 개선, 보도 자전거도로 설치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1,061억원으로 제시됨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금액(억원)	1,050.56	605.93	403.02	41.61	-	-

종합 결론

- 경제성 분석결과, B/C는 0.20으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노선의 설계속도인 60㎞/h는 기존 운영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통제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노선 전후 구간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설계속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사업시점부 이전 구간인 △△교와 △△삼거리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사업기간(2023~2030년) 내에 △△교 재가설과 △△삼거리 개선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업 종점부 이후 고등학교앞 교차로 이전 155m지점까지 확장계획이 누락된 상태이므로 해당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방향에 대해서는 확장계획 수립(중분 방향 1차로 확장 및 보도설치)이 필요함
- 교통수요 추정결과 2031년 기준 시행시 교통량(거리가중평균)은 21,031대/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미시행시 대비 1,954대/일이 증가한 수치로 6차로 교통량 수준으로는 낮은 편임
- 본 사업은 왕복 4차로 구간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VDF 변화에 따른 속도 증가 효과가 없으며, 차로수 확장에 따른 용량 증대 효과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본 사업의 경우 4차로 현재 기준 운행속도가 70km/h인데 6차로 확장시 설계속도가 60km/h로 오히려 낮아지게 되며 이를 반영하게 되면 사업시행효과는 더 작아지게 됨
-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그간의 사유재산의 제약문제 및 각종 우려사항과 특히 현재 보상이 5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의 재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01

▶ □□ ◇◇도 해상교량 건설공사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개요

- □□시는 ○○면 ○○도에서 ◇면 ◇◇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사업으로 섬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접근성 향상,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지 근방에는 연륙·연도교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본 해상교량 사업과 연계하여 섬 지역의 교통 네트워크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되는 지역임
- 연장 : L = 3.46km(해상교량 1.53km, 접속도로 1.93km)/설계속도 : V=60㎞/h
- 폭원 : B = 9.5 ~ 11.65m(왕복2차로)/항로폭 : 200.0m, 항로고 : 25.0m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1,924억원으로 제시됨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금액(억원)	2,356	1,887.3	83.9	170.6	214.1

종합 결론

- 본 사업은 수요 대비 높은 사업비용으로 인해 경제성은 확보되지 못하였음
  - 편익분석시 본 사업노선으로 인한 효과 이외에 ○○○○ 노선으로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효과가 포함됨
  - 다만, 지역 관광개발 활성화 사업과 연계로 인한 시너지, 지역 생산품 수송비 감소, 생활편의시설(병원, 마트, 관공서 등)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편익에는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 본 연도교의 분석에서는 관광(성수기 및 휴일)수요와 유발수요(유사지역 원단위)를 반영하였음
  - 경제성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유사사례들보다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본 사업노선으로 인한 효과 이외에 ○○○○ 노선으로 인한 효과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 즉, 본 사업은 연도교 사업이지만 타 사업(○○~○○)으로 인해 연륙이되며, 이로 인해 ◇◇~◇◇항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됨
- 지역 관광개발 활성화 사업과 연계성
  - 본 사업노선 주변에서 추진중인 연도교와 연계시 관광개발 활성화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관광(휴일+성수기)수요가 집중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섬내부의 필요한 기반시설을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해상교량을 통한 지역 생산품 수송비 감소
  - 본 사업 추진시, 기존 방붕재배에 대한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행정시설 지원 및 접근성 관련
  - 현재 ◇◇도 해상교량 완료 시 ,내륙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양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됨

01

▶ ◇◇◇선 □□연장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개요

- ◇◇시는 서부지역은 △△△△△△와 ○○·●● 택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여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해선과 더불어 ◇◇◇을 □□으로 연장하여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이동 편의성 제고를 통해 ◇◇ 서부지역 개발을 가속하고자 함
- 사업 면적 및 규모 : ◇◇ ◎◎◎◎◎◎역 ~ ●●역(L=22.37km), 본선(인입선) 면적(3,990㎡) 본선(반복선) : 면적(11,250㎡), 철도 12량 구입, 정거장 개량, ◆◆차량기지 유치선 추가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1,289.3억원으로 제시됨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차량구입비
금액(억원)	2,006.73	1,191.36	161.93	85.70	143.90	423.84

종합 결론

- 경제성 분석결과 B/C값이 0.91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무성 분석결과 PI는 0.22, 운영수지분석 결과 평균 운영수지 비율은 0.32로 연평균 127억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검토됨
- 본 사업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수탁 협약 체결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사업에 따른 재정 경직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운영손실보전금 규모가 상당하므로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운행 특성이 상이한 2개의 열차가 선로를 공용하는 점, 본 사업의 분기기가 ▲▲선 본선부에 설치되는 점, 본 사업은 ▲▲선 열차운행계획을 우선시하도록 계획된 점, 실제 철도의 운영에서 승객 승하차 특성에 따라 열차운행계획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실제 운영 시 계획된 열차운행계획과 달리 운영 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향후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고 및 안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 필요
- ◇◇◇선 회차선 시설 이용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열차운행계획 검토 필요

01

▶ △ △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개요

- ◇◇시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와 ○○○를 연결하는 ○○로변에 위치한 공원인 ○○공원(2001년 결정)의 실효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해, ◇◇시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 및 난개발 사전 예방 등 도심 속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함임
- 부지면적 : 178,540㎡(녹지면적 140,738㎡, 시설면적 37,802㎡)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71,983억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중 보상비는 60,607억원임(84.2%)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금액(억원)	69,299	5,608	60,489	-	600	2,602

종합 결론

- 본 사업의 부지 내 미보상된 토지가 54,592㎡로 모두 사유지이며, 총사업비 중 보상비가 약 84.2%를 차지하며, 경제성 분석결과, B/C는 0.29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시는 ○○공원 조성을 위해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동일한 시점에 타 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재원조달에 있어 유의가 필요함
- ○○공원은 도 사업과 연동하여 지자체의 첫 관문로로 조성할 경우,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도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근 ○○○동의 근린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휴식을 제공하는 근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01

▶ ◇◇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개요

- ◇◇시와 인구규모가 유사하며 최근 10년 이내 건립된 문예회관 사례를 보면 ◇◇시는 타 지역과의 문화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공연장 건립이 요구되고 있음
- ◇◇예술의전당 건립은 '4대 미래비전(문화·관광·생태환경·건강도시)'를 위한 기반시설로써 신축을 통해 점차 다양해지며 높은 수준의 공연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의 고유 가치 증대, 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738.36억원으로 제시됨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금액(억원)	743.22	468.18	8.95	62.03	169.20	34.97

종합 결론

- 본 조사에서 추정한 총사업비는 743억원으로 ◇◇시가 제시한 총사업비 738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비해 공사비 89.6억원은 감소하였으나, 시설부대비 1.2억원, 운영설비비 132.3억원 등이 증가함. 총사업비 차이가 큰 이유는 운영설비비 산정시 유사사례 무대장비비 검토 적용의 차이로 재산정하였기 때문임. 경제성 분석결과 0.21로 분석되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본 조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 수준이 높고 노후화된 현 ◇◇문화회관의 증축 또는 리모델링이 부지확보 및 비용 측면에서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운영수지 분석결과 본 사업의 운영수입으로 운영비용의 14.7%만 충당하므로 본 사업을 통하여 자치단체는 연평균 약 36억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시는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측면과 문화회관 컨설팅,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전평가, 건립추진위원회 및 예술인 간담회 개최, 건축설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유사 문예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무대시스템 관련 배치도 및 계획도면의 부재, 무대장비비로 본 사업과 규모가 다른 OO문화예술회관 비용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준비정도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19년 2차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사항에 따라 ◇◇시에서는 재원조달계획 마련, 기존시설과의 중복성 검토 및 활용방안,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 계획 등을 수립하였어야 하나, 조건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검토안의 2025~2027년 연평균 재정 부담액은 233억원 수준이며 ◇◇시의 연평균 신규가용재원(2021~2025년)은 605억원으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금액이 신규가용재원의 약 38.5%를 차지하므로 ◇◇시가 추진·계획하고 있는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문화회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시설 및 주차 공간부족, 노후화, 안전문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 위치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문제 해결도 부지 확장의 어려움, 기술적 구조적 한계, 비용 소요측면에서 어려운 것으로 검토됨
- 공연장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무대장비 관련 계획이 현재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등 관련 전문가 및 감독 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선정하여 공연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01

▶ □□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기존 ○○종합운동장을 북측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주경기장을 포함하여, 보조경기장과 볼링장, 수영장, 풋살장,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빙상장을 포함한 대규모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을 계획함
- 사업 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 427,110㎡, 연면적 72,302㎡
  – 주요시설 :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빙상장, 실내배드민턴장, 생활체육시설, 기반시설 등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3,499억원으로 제시됨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금액(억원)	4,985	3,198	989	332	12	453

종합 결론

- 본 사업은 경제성 분석결과 B/C값이 할인율 4.5% 기준 0.08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의 운영수입과 운영지출을 통해 검토한 운영수지 분석에서 연간운영수지비율이 0.38, 연평균 64억원 이상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됨
- □□시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시의 예상 총사업비 3,499억원 대비 1,486억원이 증가한 4,985억원으로 총사업비가 추정되어 재원조달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존 ○○종합운동장 매각 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매각대금(740억원) 활용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함
- □□시의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과 해당 부지의 입지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예정부지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하고 □□시의 주된 생활권과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이용접근성이 좋지 못하며, 서비스시설(음식료품 등)의 부족으로 대규모 체육행사에도 적합하지 못하여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변경 및 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을 재수립하고,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각 시설별 특징과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입지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01

▶ □□□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개요

- □□□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지속 성장에 대비하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기능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편의, 복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통해 행정서비스, 협소한 공간, 노후된 청사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 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 100,758㎡, 연면적 126,007.9㎡(지하 2층 ~ 지상 7층)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5,451.08억원으로 제시됨

검토안(억원)	연면적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비	예비비
검토안	126,008㎡	5,389	3,708	734	334	124	490
대안	114,322㎡	4,995	3,381	734	308	119	454

종합 결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면적은 대안기준 약 114,332㎡로 의뢰안보다 약 11,676㎡ 감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약 4,995억원으로 의뢰안보다 약 456억원 감소함
- 리모델링은 신축비용의 약 75%(공사비 기준)을 투입하여 건축물 성능개선은 가능하나, 증축에 불확실성으로 산재된 행정서비스 집약, 협소공간 해소에는 한계가 있고, 공사 중 임차 청사 운영비까지 추가로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방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 재원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조달 계획 검토 후 확보 가능한 재원 내에서 건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타운 추진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미추진되거나 동시에 추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신청사가 현재의 부지에서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현청사 활용방안 관련해서는 □□□는 현청사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신청사 건립 추진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01

▶ □□ ◇◇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개요

- □□시에서는 사회초년생의 주택난 해소, 기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 조성 및 구도심과의 연계를 통한 자족생활권 형성, 철도중심의 교통도시 조성, 친환경 녹지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함
- 본 사업은 전체 면적 1,326,388㎡ 중 99.6%(1,320,7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초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 계획되었으며, ○○○선 ◇◇역 건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규모가 확대되었음. 또한 당초에는 ☆☆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 공공주택사업으로의 추진이 무산되어, 사업시행자가 ☆☆에서 □□시로 변경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1조 2,022억원으로 제시됨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 비용	제세 공과금	지구외 도로	기타 비용	예비비
금액 (억원)	12,391.47	1,875.29	4,618.28	264.34	3,872.59	385.11	265.17	1,110.69

종합 결론

- 경제성 분석결과 0.375로 분석되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재무성 분석결과 재무적 할인율 4.5% 적용시 PI(사업전체 기준)는 0.91로 추정되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도시공사 관점에서의 PI 또한 0.92로 추정되어 재무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대상지는 ◇◇역이 신설됨으로써 도시개발의 잠재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으나 사업대상지 및 ◇◇역 예정지 인근지역은 사업대상지의 생태환경적 입지여건 상 생태녹지축 선상에 위치하는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적극적 개발을 통해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은 ◇◇역 신설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면적 이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의 공급과잉 우려가 있음
- 본 조사 결과 검토안 기준 공사채 발행 예상액은 5,474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공사채 발행액(2,782억원)의 1.97배 수준이며, 본 사업의 분양수입을 통해 공사채 발행액의 상환이 불가한 상황으로 사업계획 상의 공사채 발행 및 분양대금을 통한 총사업비 대부분인 99.3%를 조달하는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도시공사에서 재원조달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공사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하며,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과 동일한 시기에 사업대상지 인근의 ▽▽□□ 도시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며, 용지분양 및 공공주택 입주시기 등이 본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분양지연 가능성은 더욱 커질 개연성이 있음
-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에서는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 공공성 확보 방안, 사업대상지의 입지 타당성, 개발밀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사업추진의 당위성 부족, 사업대상지의 입지적 여건, 인허가 및 사업추진과정 상의 사업지연 가능성, 사업추진주체에 따른 위험성, 재원조달계획의 비현실성을 고려할 때 규모 및 시기 등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01

▶ ○○ ☆☆문화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2022년 10월 ○○○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동시에 ○○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임
- 사업 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 26,604.6㎡, 연면적 2,8077.11㎡
  - 주요시설 : 문화공원 부속시설(커뮤니티시설, 상호보완시설 등)2,702.38㎡, 공영주차장(450대) 25,374.73㎡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5,472.77억원으로 제시됨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금액(억원)	4,919	706	4,051	80	3	79

종합 결론

- 본 사업은 경제성 분석결과, B/C는 0.6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연간 운영수지는 1.18로 분석됨
  - 다만, 본 사업은 입지적 특성상 주변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로서 역할이 기대되며, 향후 관광 산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편익은 변동될 가능성이 큼
- (주차장 운영 관련) (가칭)□□□□□□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차수요와 관련해서 ○○○-◇◇◇간 '업무협약'을 맺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외에는 비용부담 및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여 향후 ○○○ 입장에서 현재 도심내 부족한 주차장 공급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약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공원 시설 관련) 문화공원의 부속으로 계획된 소규모 문화시설 중 키즈센터나 스튜디오센터의 프로그램 등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밀착형의 문화시설로서 계획되어 향후 사업대상지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주변시설과 중복되지 않고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함
- (교통 문제 관련) 본 공영주차장 입출입구가 계획된 △△로의 교통정체 가중문제로 인해 ○○○는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로의 교통정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정이나, 이로 인해 향후 면적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및 사업비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지연 가능성) 본 대상지 자체 역사성이나 주변지역에 많은 역사문화적 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 2층 깊이로 건축공사 진행시 추가적인 문화재 발굴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 계획 단계에서 사업지연 가능성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음

01

▶ △△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시가 현 로봇드론지원센터를 리모델링 및 신축하는 사업으로, 방위사업청 공모사업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임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22년에 선정되어 2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시험장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이 필요하여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3,499억원으로 제시됨

검토안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장비구입비	기타비용	예비비
금액(억원)	818	129	204	13	78	358	35

종합 결론

- 본 조사에서 추정한 총사업비는 818억원으로 리모델링 범위과 증축 범위 시 건축공사비 단가 차이와 용지보상비의 보상배율 적용 차이 때문임
- 로봇드론지원센터의 편익은 장비활용편익, 참여기업의 부가가치 증대효과, 입주기업의 시설활용 편익,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편익은 참여기업의 부가가치 증대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로 산정함.
  다만,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방산특화 창업부문은 불명확하고 불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익산정에서 제외함
- 국방, 드론산업관련 다수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시에 서 본 사업을 통해 얻을수 있는 로봇 드론 분야의 방산혁신 성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인정되나,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제시된 로봇, 드론, 방산기업의 지원과 시험 장비구축, 기업입주, 네트워킹 등 운영 시에 각 부분별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함
- △△ 및 권역 내 유사시설 장비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하여 군 및 수요처가 요구하는 시험평가 기준에 부합한 장비를 선정하였고, 로봇드론기업 의 시험 및 인증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장소로, 타 시설 과의 차별성은 인정됨. 다만, 인근 TP의 보유장비와 본 시설의 장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함

02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가. 2023년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수행 실적

◆ 2023년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는 총 2건이 약정되었음

■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시도	기초	사 업 명	조사
□□	본청	인베스트□□설립 타당성 검토	출연
◇◇	본청	◇◇금융주식회사설립 타당성 검토	출자

▶ 인베스트□□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 개요

- ◇◇경제진흥원에 투자유치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 내에서의 제한적 역할과 위상의 한계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효과적인 기능 수행 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독립 기관화를 추진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내 투자유치 및 해외금융기업 유치 및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등을 통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IPA,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베스트◇◇ 설립을 추진함)

종합 결론

- 각 사업팀별 법적 대상사업 여부, 수행 부적합 사무 존재 여부, 공공성 검토 결과 법률상 사무에 해당하고, 설립 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설립 후 5년간 영업수입은 88억원, 영업비용은 539억원으로 452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현행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비용-효과(수지개선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조직설계 가이드라인을 판단 근거로 하여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인력과 조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 기관당 평균 출자출연금 규모는 1,151억원 수준으로, 인베스트서울 현금 출연금 비율은 8.62% 수준으로 추정되어 지자체 부담 능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투자유치 진흥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시 산하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없으나, 국가의 관계부처와 KOTRA 산하 인베스트코리아 등에서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의 차별화를 명확히 해야함
- 본 사업은 조직 및 예산 설계 기준 가이드라인은 충족하고 있으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비효율적, 방만 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재정여건 강화를 위하여 '서울글로벌센터'를 현물 출연 계획하였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으로 추가적인 지방재정의 확보가 필요함
  - '◇◇글로벌센터'의 현물출연 계획은 행정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으로 실현될 수 없음
  - 따라서, 계획된 임대료 운영수입은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 감소분만큼의 추가 현금 출연은 매년 약 99억원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

02

▶ ◇◇금융주식회사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 개요

- ◇◇시는 □□특구, ○○○ 등 R&D기관이 위치해 있어 첨단기술에 강점이 있고, 대기업이 부재한 ◇◇의 산업구조에서는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나, 실물경기 둔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지역 내 벤처기업들의 어려움(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시는 500억원을 출자하여 ◇◇투자금융(주)를 설립하여 지역 내 주력산업(Deep-tech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자본금 30억원은 본계정으로 ◇◇투자금융(주)에서 직접투자하며, 20억원은 ◇◇투자금융(주)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임
  - 나머지 자본금 450억원과 민간출자금 1,000억원으로 1,45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내 벤처기업에 대한 직· 간접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하고자 함

종합 결론

- ◇◇시는 □□, ○○를 제외하고 벤처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이나, 최근 5년간 ◇◇시 투자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65.9%의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인정됨
- 사업시행주체인 ◇◇투자금융(주)의 입장에서 재무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할인율 4.5% 기준으로 P/I가 0.89로 추정되어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조직설계 가이드라인을 판단 근거로 하여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인력과 조직의 요건을 모추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사업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기관이 수행하는 대상사업,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시도 사무영역에 해당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설립요건(설립형태,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함
- ◇◇시에서는 기관 설립의 안정성을 위해 출자금의 일부(20억원)를 기관 운영비로 배정하고 있으나, 수입 감소(민간출자 불확실성) 및 운영비 증가요인(사외이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규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조직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모펀드-자펀드-타펀드, 본계정 투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사업구조로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과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 이해상충 방지대책마련이 필요함
- 본계정 투자, 자펀드(직접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회 출자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직접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03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가. 2023년 자체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 **자체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지방재정투자사업(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비의무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타당성조사임**

◆ **LIMAC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타당성조사(이하 자체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수행건수는 174건으로 계획(100건) 대비 174% 초과 달성함**

○ 사업비 적정성 검토 98건 중 26건(27%)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함

○ 2023년 사업비 적정성 및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규모 적정성 검토 실적(174건)은 작년 대비 44건 증가함

■ 2022/2023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현황 비교

수행건수(건)	2022년						⇒	2023년				
	1차	2차	3차	4차	수시	계		1차	2차	3차	4차	계
사업비 적정성	20	13	15	15	5	68		20	21	21	36	98
자체타당성조사	23	15	8	14	2	62		20	17	16	18	71
규모 적정성	-							-		3	2	5
합계	43	28	23	29	7	130		40	38	40	56	174

03

나. 2023년 자체타당성조사 검토의견서

◆ 2023년 1차 (가칭)○○○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구분	의뢰서	자타	비고
총사업비	349억원	349억원	
B/C	1.42	1.42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의뢰안의 경우 조달청 유사사례(□□체육문화센터, □□읍 생활체육센터)의 건축 공사비 단가를 2024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제시함(3,932천원/㎡) ➜ 의뢰안과 검토안의 공사비 단가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의뢰서의 경우 실제 비용 집행 시점인 2024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이므로 조정이 필요함	X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누락된 항목은 없으나 공사비 산정에 있어 기준연도 조정이 필요하며, 해당 공사비에 요율로 계산되는 부대비 역시 조정이 요구됨	X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의뢰안의 경우 전체 부지면적(23,771㎡) 중 사유지(7,725㎡)에 대한 보상비만을 산정·제시하였으므로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용지보상비 추정이 필요함	X
		4)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토지조서가 미제시됨에 따라 판단이 불가함	판단불가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사유지 외 부지에 대한 용지보상비가 미산정됨	X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예비비는 10%로 반영됨	O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미산정된 용지보상비를 반영한 검토안의 총사업비가 381억원이므로 500억을 초과할 가능성은 낮음	O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본 사업의 경우 시설구성(다이빙풀)을 고려한 운영비 산정이 필요하나, 공공시설은 유사사례가, 민간시설은 운영비 산출자료가 부재하여 판단이 불가함 - 의뢰서상 경상비 추정에 활용된 유사사례가 불분명하며, 인건비 역시 본 시설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판단하기 어려움	판단불가

구분		항목	결과
경제성분석	수요	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① ○○○ 관광단지(잠재수요): 중력모형 및 관광총량할당법 추정치의 평균값 - 중력모형(250만명), 관광총량할당법(194만명), 두 추정치의 평균값(223만명) ② 본 시설 수요: ○○○ 관광단지 수요에 각 활동비율을 적용	중력모형 및 기타
		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 본 사업은'○○○ 관광단지' 내 입지한 다수 시설 중 하나로 중력모형에 반영된 준거시설들은 ○○○ 관광단지 전체의 잠재수요를 도출하기 위함임 ➜ 상기 잠재수요 추정을 위해 유사관광단지를 준거시설로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 판단됨(수요추정과정에서 ○○○관광단지의 규모도 고려됨)	O
		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 본 시설은 '○○○ 관광단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 이용(수요) 대상이므로 잠재수요권역을 전국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 판단됨	O
		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 관광단지 전체의 잠재수요에 본 시설과 연관 있는 활동별 수요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수요이므로 과대 및 중복 추정의 오류가 있음 ➜ ○○○ 관광단지 내 계획된 경쟁시설에 대해서도 미고려됨	X
	편익	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 의뢰안에서 산정한 본사업의 편익은 ① 여가개선 편익 ② 질병감소 편익 ③ 공공시설(다이빙풀 및 체험풀) 이용에 따른 이용료 절감편익임	객단가
		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 이용료절감 편익의 객단가 산정에 있어 k-26을 공공시설로 가정한 근거가 미흡하고, 규모(다이빙풀의 수심)가 상이한 두 시설의 단가차이를 적용한 것은 부적정하다 판단됨	X
		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여가개선 편익의 경우 과대추정된 수요를 반영하였으므로 부적정함 ➜ 본 시설은 여가 및 관광시설로 판단되므로 질병감소(의료비절감) 편익의 경우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이빙풀 및 체험풀에 대한 이용료절감편익 역시 최대 가용인원(충원율 미고려)을 가정한 수요를 적용하였으므로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큼	X
		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부가가치세 제외, 분석기간 30년, 불변가격 적용, 잔존가치 등을 반영함	O
운영수지 분석		18)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시설별(다이빙풀 및 체험풀) 최대가용인원을 가정하여 추정된 수입이므로 과대추정이라 판단됨 ➜ 수입 산정시 유료이용객의 비율을 50%로 가정한 부분도 근거가 미흡함	X

03

<table>
<tr><th>구분</th><th>항목</th><th>결과</th></tr>
<tr><td>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td><td colspan="2">➜ 본 사업의 시설구성을 감안할 때, 민간시설 외 유사사례가 부재하므로 비교가 불가함</td></tr>
<tr><td>특이사항 기술</td><td colspan="2">➜ 없음</td></tr>
<tr><td>종합의견
(과다/적정/과소/
판단불가)</td><td colspan="2">
<table>
<tr><th>총사업비</th><th>운영비</th><th>수요</th><th>편익</th><th>경제성 분석</th><th>재무성 분석
(운영수지)</th></tr>
<tr><td>과소</td><td>판단불가</td><td>과대</td><td>과대</td><td>과대</td><td>과대</td></tr>
</table>
➜ 총사업비의 경우 일부 누락된 사업부지에 대한 용지보상비의 추가반영이 필요함
➜ 전체 ○○○ 관광단지 잠재수요에 본 시설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별 수요가 모두 합산된 수요로 과대추정이라 판단됨
➜ 특히 시설(다이빙풀, 체험풀)별 수요는 충원율을 고려하여 재산정이 필요함
➜ 과소추정된 비용과 과대추정된 수요를 반영하여 산정한 편익이므로 경제성 분석결과는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큼
➜ 과대추정된 수요를 적용하여 산정된 수입의 감소분을 고려할 때 운영수지 역시 하향조정이 필요함
</td></tr>
</table>

03

◆ 2022년 2차 ◇◇◇◇체육센터 신축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구분	의뢰서	자타	비고
총사업비	487억원	371억원	의뢰서와 자타의 사업규모가 상이하여 의뢰서 기준으로 검토
B/C	1.02	-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의뢰안의 경우 실시설계(진행 중) 산정내역 근거로 공사비(96.4억원)를 제시하였으며, 재산정 결과 99.6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임	O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누락됨	X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자체 감정평가 결과로 350억원을 제시하였지만, 사업부지 면적(93,125㎡)의 일부(90,000㎡)에 대해서만 산정되었음	X
		4)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시유지 및 사유지 구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불가함	판단불가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감정평가액을 적용함	해당없음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실시설계(중)으로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예비비 반영이 필요함	X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전체 부지면적에 대한 보상비를 재산정하고, 누락된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를 반영할 경우,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X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예정으로 인건비는 추가인력 3명만 산정하였으나, 일반관리비가 누락됨	X
규모의 적정성		9) 규모는 적정한가? ➜ 본 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 시설규격이 정해진 다양한 야외체육시설로 구성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규모 적정성 검토가 불가함	-
경제성 분석	수요	10)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1. 중력모형(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 ◇◇시 전체와 인접 지역의 2026년 추계인구(365,130명)를 기반으로 잠재 이용객 수(183,175명, 인구/거리²)를 산정하고,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에 해당하는 이용률과 규모가중치를 곱하여 이용객(83,718명) 수를 추정함 2. 간편법(풋살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 풋살장, 족구장, 파크골프장의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최대이용객(104,104명/년)을 산정하고, 유사시설의 예약률을 적용하여 최종 이용객 수(41,245명)을 추정함	중력모형, 간편법

03

구분		항목	결과
경제성분석	수요	11)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1. 중력모형(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중력모형의 준거시설이 어느 시설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구장 단위나 시설 단위 사례를 섞어 사용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준거시설을 사용함 2. 수용력(풋살장, 족구장, 파크골프장):예약률 추정에 사용한 유사시설을 제시하지 않음	X
		12)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 사업대상지는 ◇◇시 서측에 위치하여 있으나 ◇◇시 전역과 인접지역(□□시 ○○1·2동, ○○동)을 수요권역으로 산정하여 과다함	X
		13)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1. 중력모형(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 잠재 이용객에 다양한 유사시설의 평균 이용률 및 규모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세부 산정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적정성 판단이 불가함 2. 간편법(풋살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 수용가능인원에 유사시설 예약률을 적용하였으나, 유사시설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고 현장/전화 예약률 10%를 임의로 추가하여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3. 경쟁시설 미고려 ➜ ◇◇시 및 □□시 내 다양한 유사시설이 존재하나 경쟁시설이 고려되지 않음	X
	편익	14)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객단가
		15)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6)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1. 의료비 절감 편익 -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평균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2,141천원/년) 사용하였으나, 절감률(55.8%)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적정성 판단이 불가함 2. 주차장 무료이용 편익 -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으로, ◇◇시 주차장 조례의 주차요금(4천원/회)에 회전율(60%)를 적용하여 편익으로 산정하였으나, 주차장은 시설이용자를 위한 부속시설이므로 편익 대상이 아님 3. 민간시설 이용 편익 -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에 대해 민간시설 이용료와의 차이를(축구장 47,000원, 야구장 55,000원, 파크골프장 2,197원) 편익으로 산정하였으나, 민간시설 이용료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적정성 판단이 불가함	X
		17)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편익은 경쟁시설을 고려하지 않아 과다하게 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사업의 편익으로 보기 어려운 주차장 무료이용 편익을 산정하여 과다추정됨	X
		18)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할인율 4.5 적용, 분석기간 30년, 잔존가치 적용됨	O

<table>
<tr><th>구분</th><th>항목</th><th>결과</th></tr>
<tr><td>운영수지 분석</td><td>19)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수입은 금전적 편익(운영수익, 대관수익)과 비금전적 편익(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여 과다산정함
➜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예정으로 인건비는 추가인력 3명만 산정하였으나, 일반관리비가 누락됨</td><td></td></tr>
<tr><td>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td><td>
<table>
<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토지면적
(㎡)</th><th rowspan="2">연간 방문객</th><th rowspan="2">운영방식</th><th rowspan="2">운영인력</th><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tr>
<tr><th>비용</th><th>수익</th><th>순수익</th></tr>
<tr><td>본 사업</td><td>93,125</td><td>83,718명</td><td>위탁</td><td>3명</td><td>573</td><td>3,172</td><td>2,599</td></tr>
<tr><td>○○종합 ☆☆☆스포츠타운</td><td>98,879</td><td>124,758명</td><td>위탁</td><td>13명</td><td>987</td><td>357</td><td>-611</td></tr>
<tr><td>▽▽ 스포츠파크</td><td>98,508</td><td>247,425명</td><td>위탁</td><td>4명</td><td>370</td><td>75</td><td>-295</td></tr>
<tr><td>△△△ 스포츠파크</td><td>83,544</td><td>34,953명</td><td>위탁</td><td>2명</td><td>262</td><td>53</td><td>-209</td></tr>
</table>
➜ 운영수지는 경제적 편익(비금전적 편익)이 포함되어 있어 유사시설 대비 과다함</td><td></td></tr>
<tr><td>특이사항 기술</td><td>➜ 전액 자체제원(467억원)으로 투자심사(적정) 후 재원조달계획의 변경(487억(도비 37억원, 시비 450억원)으로 중앙투자심사 의뢰</td><td></td></tr>
<tr><td>종합의견
(과다/적정/
과소/판단불가)</td><td>
<table>
<tr><th>총사업비</th><th>운영비</th><th>수요</th><th>편익</th><th>경제성 분석</th><th>재무성 분석
(운영수지)</th></tr>
<tr><td>과소</td><td>과소</td><td>과대</td><td>과대</td><td>과대</td><td>과대</td></tr>
</table>
➜ 의뢰안은 보상비 산정시 일부면적이 누락되었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를 누락하여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운영비는 일반관리비가 누락됨
➜ 수요는 사업대상지가 안산시 서측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경쟁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안산시 전체 및 인접지역을 수요권역으로 설정하여 과다추정됨
➜ 편익은 의료비 절감편익과 민간시설 이용편익은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적정성 판단이 어려우나 과다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사업의 편익으로 보기 어려운 주차장 무료이용 편익을 산정하여 과다추정됨
➜ 운영수지의 수입금에 비금전적 편익을 포함하였으며, 연간 대관 횟수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과다하게 추정함</td><td></td></tr>
</table>

03

◆ 2023년 4차 □□ 청소년시설 건립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구분	의뢰서	자타	비고
총사업비	368억원	368억원	
B/C	0.88	0.88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의뢰안의 경우 조달청 유사사례 및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단가를 2026년(공사시점)으로 물가보정하여 적용하여 과다추정함	X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조사측량비가 누락됨	X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보상비는 2022년 공시지가(2,184천원)에 적정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2023년 공시지가(2,006천원) 반영 시 보상비는 71억원으로 의뢰안(78억원)대비 6.33억원 감소함 - 사업부지는 □□도시공사 소유로 □□시와 5년간(20.6.1~25.5.31) 무상임대 계약 체결함	X
		4)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 주거지역용도및 주거용 이용상황의 평균인 보상배율(1.56%) 적용	○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예비비(10%) 반영	○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적정 공사비 단가와 공시지가 반영 시 누락된 조사측량비를 고려하더라도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낮음	○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시청소년문화센터(6,807㎡) 사례로 직급별 인건비를 산정하고, ◇◇청소년문화의집(588.9㎡)의 사례로 시설운영비를 산정하였음 ➜ 강사료는 △△△동 주민자치시설의 1회당 강사료(27,000원)를 반영하여 추정함	○
규모의 적정성		9) 규모는 적정한가? ➜ 동종 자치단체 내 문화시설과 비교한 결과 본 시설의 연면적(5,337.72㎡)은 평균 대비 38.4% 수준이지만, 준거시설(□□시청소년문화센터)의 면적(6,807㎡)과 유사함	

구분	문화시설				
	연면적 합계	샘플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시- I	583,214	42	13,886	56,351	1,392

구분		항목	결과
경제성분석	수요	10)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간편법
		11)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 본 사업(5,337.72㎡)과 유사한 규모이며 □□시가 운영 중인 □□시청소년문화센터(6,807㎡)를 준거시설로 설정하였으나, 실수요 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음	X
		12)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3)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시청소년문화센터 ㎡당 이용자수(37.9명)에 본 시설 규모 비율을 고려하여 연간이용인원(75,483명)을 추정함 ➜ 의뢰서에 제시된 연간 프로그램 강좌수(2,592회)에 준거시설(□□시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정원(20명)을 적용하면 51,104명 수준으로, 의뢰서 추정 수요(75,483명)에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임	X
	편익	14)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1. 임대료 절감편익(객단가) - □□ 청소년 문화의집 면적(588.9㎡) 대비 확장되는 면적(2,672.28㎡)에 대해 임대료 절감 편익을 산정함 2. 프로그램이용료 절감편익(객단가) - 시설수요에 □□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평균 수강료(2,745원)와 □□시 내 민간 문화센터 강좌 평균 이용료(19,690원)의 차이 16,945원/회을 적용함 3. 여가활동 개선편익(객단가) - 시설수요에 서울시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여가활동 개선편익 객단가(1,298원, 2022년 기준)를 적용함 4. 현시설 활용편익(객단가) - 본 시설로 이전 예정인 □□ 청소년 문화의집의 기존 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편익으로 반영 5. 시간 및 거리편익(객단가) - 서울시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시간 및 거리비용을 편익으로 반영함	객단가
		15)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6)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1. 프로그램이용료 절감편익 ➜ 준거시설인 □□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창의력미술, 드럼, 클레이, 댄스 등)의 평균 수강료와 의뢰서에 제시된 민간시설 문화 프로그램(프랑스 요리, 바이올린, 키즈 필라테스 등)의 평균 수강료 차이를 산정하였으나, 유사한 수준의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려움 ➜ 본 시설은 청소년 문화시설로 여가활동 개선편익, 시간 및 거리비용 편익은 부적절하며, 임대료 절감 편익은 편익이 아님	X

03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항목</th><th>결과</th></tr>
<tr><td rowspan="2"></td><td rowspan="2">편익</td><td>17)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편익은 과다하게 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객단가 역시 본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시설 이용료 차이를 적용함
➜ 본 사업의 편익으로 보기 어려운 임대료 절감편익, 여가활동 개선편익 및 시간 및 거리 편익을 산정하여 과다 추정됨</td><td>X</td></tr>
<tr><td>18)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할인율 4.5 적용, 분석기간 30년, 잔존가치 적용됨
➜ 부가가치세 제외됨</td><td>O</td></tr>
<tr><td colspan="2">운영수지 분석</td><td>19)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수입은 프로그램 최대 정원(2,592강좌x20명=51,104명)을 초과하여 추정된 수요(75,483명)를 바탕으로 산정되어 과다추정됨
➜ 비용은 □□시청소년문화센터(6,807㎡)의 인건비, 유사사례(영등포구 대림3동 주민자치시설)의 강사료, □□청소년문화의집(588.9㎡)의 시설운영비를 근거로 산정하였음</td><td>X</td></tr>
<tr><td colspan="2">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td><td colspan="2">
<table>
<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연면적(㎡)</th><th rowspan="2">연간 방문객</th><th rowspan="2">운영방식</th><th rowspan="2">운영인력</th><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tr>
<tr><th>비용</th><th>수익</th><th>순수익</th></tr>
<tr><td>본 사업</td><td>5,338</td><td>75,483명</td><td>위탁</td><td>16명</td><td>895</td><td>207</td><td>-688</td></tr>
<tr><td>□□청소년수련관</td><td>5,395</td><td>126,962명</td><td>위탁</td><td>18명</td><td>1,116</td><td>92</td><td>-1,023</td></tr>
<tr><td>◇◇시청소년수련관</td><td>5,019</td><td>334,108명</td><td>위탁</td><td>26명</td><td>3,047</td><td>1,453</td><td>-1,594</td></tr>
<tr><td>☆☆시청소년수련관</td><td>6,099</td><td>395,851명</td><td>위탁</td><td>21명</td><td>3,684</td><td>507</td><td>-3,177</td></tr>
</table>
➜ 투자심사 의뢰서에 제시된 유사사례가 규모와 시설·기능이 본 사업과 맞지 않아 다른 사례를 제시함
➜ 유사사례 대비 수익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운영수지가 과다 추정됨
➜ 유사시설은 대부분이 실사용 공간이 반면, 본 시설은 연면적의 37%를 지하주차장(1,991㎡)으로 구성하여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됨</td></tr>
<tr><td colspan="2">특이사항 기술</td><td colspan="2">➜ 없음</td></tr>
<tr><td colspan="2">종합의견
(과다/적정/과소/판단불가)</td><td colspan="2">
<table>
<tr><th>총사업비</th><th>운영비</th><th>수요</th><th>편익</th><th>경제성 분석</th><th>재무성 분석
(운영수지)</th></tr>
<tr><td>과소</td><td>적정</td><td>과대</td><td>과대</td><td>과대</td><td>과대</td></tr>
</table>
➜ 의뢰안은 조달청 2개 사례 및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단가를 2026년 기준으로 보정 적용하여 공사비가 과다추정 되었으며, 2023년 공시지가 반영 시 총사업비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 수요는 실수요면적이 크게 차이나는 □□시청소년문화센터를 준거시설로 수요를 추정하였으며, 추정 수요 75,483명은 계획된 프로그램 최대 정원(2,592강좌x20명(가정)=51,104명)을 초과함에 따라 과다추정됨
➜ 편익은 과다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 프로그램과의 차액을 적용하여 과다추정됨. 또한, 임대료 절감편익, 여가활동 개선편익 및 시간, 거리비용은 본 사업의 편익으로 보기 어려움
➜ 수입도 과다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운영수입을 과다하게 추정함</td></tr>
</table>

◆ 2023년 4차 △△국민체육센터 건립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구분	의뢰서	자타	비고
총사업비	360억원	317억원	의뢰서 기준으로 검토
B/C	0.95	0.95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실시설계가 완료(2021.12)된 사업으로 공사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추정됨	X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조사 및 측량비 반영이 필요함	X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본 사업은 현재 체육시설부지 1필지 안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동일목적·용도로 보아 보상비를 미반영함	O
		4)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전체 부지가 시유지임	X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경제성용 비용에 보상비가 누락되어 있음	X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미반영	X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실시설계가 완료(2021.12)된 사업으로 누락된 보상비를 반영하더라도 총사업비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경비로 제시함 ➜ 시설물관리비, 유지보수비 반영이 필요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설비비의 교체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X
규모의 적정성		9) 규모는 적정한가? ➜ 동종 자치단체 내 체육시설과 비교한 결과 본 시설의 연면적(10,389㎡)은 평균 대비 46.7%이며, 관내 ☆☆레포츠센터(9,792㎡)와 유사한 수준임	O

구분	체육시설				
	본사업 면적	유사사례 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시-Ⅰ	10,389	38	22,222	73,175	1,968

03

구분		항목	결과
경제성분석	수요	10)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 체육센터의 경우 시설별 수요(헬스장, GX실, 수영장)는 관내 유사시설(□□국민체육센터)의 면적당 이용자수를 참고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례의 면적당 이용수요와 다른 값을 적용함 ➜ 공영주차장(체육관 부설주차장 85대, 공영주차장 153대)의 수요 추정과정이 없음	간편법
		11)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 준거시설로 제시한 □□체육센터는 국제규격 경영풀(50MX10레인)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본 사업(25mX5레인)과 유사시설로 보기 어려움	X
		12)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 별도의 수요 권역을 설정하지 않았음	해당없음
		13)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적정하지 않은 준거시설의 실적치를 활용하였으며, 주변 경쟁시설로부터의 이전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수요 적정성 판단이 불가함	X
	편익	14)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 편익은 금전적 수입(프로그램 수입, 사물함 수입, 공용주차장 수입)과 비금전적 편익(의료비 절감, 강습료 절감, 주차위반 과태료 절감, 교통환경 부담 감소, 교통비 절감)으로 산정함	객단가
		15)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6)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 체육시설의 월이용금액을 금전적 수입 편익항목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부과기준 조례를 근거로 단가를 산정함	X
		17)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편익의 금전적 수입은 이용수요에 이용요금으로 산정하였으나, 비금전적 수입(의료비 절감, 강습료 절감, 주차위반 과태료 절감, 교통환경 부담 감소, 교통비 절감) 추정 과정에 제시하지 않아 적정성 검토에 한계가 있음 - 금전적 수입 중 사물함은 정기이용자가 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부대시설이므로 편익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비금전적 편익은 편익산정 내역 및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음	판단불가
		18)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2019년 기준 불변가격, 할인율 4.5%, 운영기간 30년을 적용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않았고, 경제성 분석 시 토지의 잔존가치가 반영되지 않음	X

<table>
<tr><th>구분</th><th>항목</th><th>결과</th></tr>
<tr><td>운영수지 분석</td><td>19)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수입은 경제성 편익의 금전적 편익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수입, 사물함 수입, 공용주차장 수입으로 제시함. 수요 과다추정에 따라 운영수입 또한 과다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운영비용은 인건비, 운영경비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경비의 구체적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적정성 검토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누락 항목(시설물관리비, 유지보수비, 체육시설의 운영설비비의 교체비용 등)이 있어 과소추정됨</td><td>X</td></tr>
<tr><td>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td><td>
<table>
<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연면적(㎡)</th><th rowspan="2">연간 방문객</th><th rowspan="2">운영방식</th><th rowspan="2">운영인력</th><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th rowspan="2">비고</th></tr>
<tr><th>비용</th><th>수익</th><th>순수익</th></tr>
<tr><td>본 사업</td><td>5,338</td><td>75,483명</td><td>위탁</td><td>26</td><td>3,499</td><td>2,434</td><td>-1,065</td><td>공용주차장 수입 제외</td></tr>
<tr><td>□□국민체육센터</td><td>5,395</td><td>126,962명</td><td>위탁</td><td></td><td>4,581</td><td>2,784</td><td>-1,797</td><td>지방재정365</td></tr>
<tr><td>☆☆레포츠센터</td><td>6,099</td><td>395,851명</td><td>위탁</td><td></td><td>3,199</td><td>2,835</td><td>-364</td><td>지방재정365</td></tr>
</table>
➜ 유사시설과 비교결과 연간 방문객과 운영수지는 유사시설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토됨
※ 유사시설은 지방재정 365의 공공시설운영현황 자료로 연면적 기준으로만 시설 분류가 되어 있어 위의 사례(50m 국제규격 경영풀)가 실제 유사시설로 보기 어려움</td><td></td></tr>
<tr><td>특이사항 기술</td><td>➜ 없음</td><td></td></tr>
<tr><td>종합의견 (과다/적정/과소/판단불가)</td><td>
<table>
<tr><th>총사업비</th><th>운영비</th><th>수요</th><th>편익</th><th>경제성 분석</th><th>운영수지</th></tr>
<tr><td>과소</td><td>과소</td><td>과대</td><td>과대</td><td>과대</td><td>과대</td></tr>
</table>
➜ 운영비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반영하였으나 일부 누락 항목(시설물관리비, 유지보수비, 체육시설의 운영설비비의 교체비용 등)이 있어 과소추정됨
➜ 수요는 규모가 상이한 준거시설을 적용하였고, 과다 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단가 및 이용요금을 적용하여 편익이 과다 추정되어 B/C 역시 과다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누락된 운영비 항목 추가 시 비용 증가 예상되며, 과다한 수요를 적용하여 운영수지가 과다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td><td></td></tr>
</table>

03

◆ 2023년 4차 ◎◎복합커뮤니티(2단계) 생활SOC복합화 사업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구분	의뢰서	자타	비고
총사업비	496억원	517억원	의뢰서 기준으로 검토함
B/C	0.97	0.97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조달청 유사사례 자료를 토대로 단위공사비를 검토한 결과 의뢰서 공사비는 규모는 적정함	O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본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 공사비와 부대비 누락 항목은 없으나 부대비는 최신 자료의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교육센터가 복합화된 시설이며, 시설 운영을 위한 최초 투입 장비, 설비 및 운영전산시스템 등의 운영설비비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X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사업부지에 대하여 조성원가(2,707천원/㎡)를 기준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됨으로 이를 준용함	O
		4)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현재 부지는 ○○소유이며 23년5월 매입대금 잔금 납부 후 등기예정	X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부지매입예정가 적용	해당없음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의뢰서는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예비비를 미반영함	O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운영설비비가 미반영되어, 이를 추가할 경우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함	O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시설별 운영비는 일부 누락된 항목이 존재하여 과소추정됨 - 체육센터는 유사시설(△△□□문화회관)의 운영관리비 준용하여 추정하였으나, 유사시설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준거시설의 적정성 여부 판단이 불가하고, 체육시설 관련 유지보수비, 재투자비, 강사료 등이 누락되어 과소추정됨 - 도서관은 유사규모 도서관 운영비를 참조하여 제시하였으나, 최신의 자료 및 단가를 인용하여 운영비 재추정(자료구입비 및 기타운영비)이 필요함	X

구분		항목	결과
경제성분석	수요	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 본 사업은 간편법을 활용하여 세부시설별 수요인원을 추정함	간편법
		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 체육시설 준거시설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로,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16,083㎡로 본 사업 체육시설 계획면적인 3,577㎡와 차이가 존재하며,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25m*6레인·50m*8레인으로 본 시설 수영장 계획규모인 25m*5레인과 큰 차이가 있어 준거시설로 부적합함 ➜ 도서관 수요인원 준거시설은 △△시 ◇◇, ☆☆, ▽▽도서관으로, ◇◇도서관(3,487㎡), ☆☆도서관(2,145㎡)은 본 사업 도서시설규모(2,435㎡)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이며, ▽▽도서관(719㎡)은 본 사업과 차이가 존재함	X
		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체육시설은 규모가 상이한 △△종합운동장 연간이용자수에 가동율(헬스장, GX룸, 다목적실 등은 70%, 수영장 85%)을 단순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하여 과다추정 가능성이 있음 ➜ 도서관 수요 추정 결과는 세부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 문화교육센터는 가동률 70% 적용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적정여부 판단이 불가함 ➜ 주변 경쟁시설로부터의 이전수요 및 신규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수요 과대 추정의 우려가 있음	X
	편익	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 객단가에 기반하여 경제적 편익을 도출하였고, 시설별 민간시설 대비 요금 차액, 시간 및 거리비용 절감 편익 등을 적용함	객단가, 기타
		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해당없음
		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 민간시설 단가 산정 근거가 부재하고, 기준년도 단가가 아닌 2025년 단가를 적용하여 부정적한 단가를 적용함 ➜ 체육시설의 이용료 절감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반영한 민간시설 및 단가 선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 도서관 시간비용 산정에 『KDI 도로·철도 부문 예타지침』(2008)을 활용하여 시간비용 및 거리비용을 적용하였으나, 왕복 30분 산정근거가 부재함 ➜ 문화교육센터 수강료 절감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민간시설 단가(100,000원) 선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편익단가는 운영계획에 제시된 계획요금 평균가는 37,000원으로 계획요금 단가와 편익요금 단가가 상이함	X
		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과대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부적정한 단가 및 이용요금을 적용하여 편익 과대추정의 우려가 있음	X
		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할인율 4.5%, 운영기간 30년을 적용하였고,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음 ➜ 부가세 제외 및 잔존가치 반영이 필요함	X

<table>
<tr><th>구분</th><th>항목</th><th>결과</th></tr>
<tr><td>운영수지 분석</td><td>18)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운영비 누락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추가시 비용이 증가됨
➜ 과다추정된 수요를 적용하여 수입을 도출하여 운영수입 과다추정됨</td><td>X</td></tr>
<tr><td>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td><td>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연면적(㎡)</th><th rowspan="2">연간 방문객</th><th rowspan="2">운영방식</th><th rowspan="2">운영인력</th><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tr>
<tr><th>비용</th><th>수익</th><th>순수익</th></tr>
<tr><td rowspan="3">체육
시설</td><td>본사업</td><td>3,577</td><td>32,920*</td><td>위탁</td><td>22</td><td>2,219</td><td>1,470</td><td>-749</td></tr>
<tr><td>△△ ◎◎남부국민체육센터</td><td>3,799</td><td>139,010</td><td>위탁</td><td>12</td><td>1,711</td><td>541</td><td>-1,170</td></tr>
<tr><td>△△ ○○국민체육센터</td><td>3,689</td><td>276,308</td><td>위탁</td><td>31</td><td>1,433</td><td>1,219</td><td>-214</td></tr>
<tr><td rowspan="3">도서관</td><td>본사업</td><td>2,349</td><td>275,093</td><td>직영</td><td>10</td><td>975</td><td>1</td><td>-974</td></tr>
<tr><td>△△ □□ ☆☆도서관</td><td>2,469</td><td>182,587</td><td>직영</td><td>12</td><td>948</td><td>0</td><td>-948</td></tr>
<tr><td>△△ ◇◇ ☆☆도서관</td><td>1,998</td><td>230,301</td><td>직영</td><td>17</td><td>566</td><td>0</td><td>-566</td></tr>
</table>
➜ 본 사업 시설은 체육시설(3,577.24㎡), 문화교육센터(1,153.43㎡), 도서관(2,349.57㎡)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관계로 시설별 유사시설을 선정함
➜ 체육시설은 본 사업과 유사한 규모의 체육시설과 비교결과 수익이 축소되어 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서관은 유사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됨</td></tr>
<tr><td>특이사항 기술</td><td>➜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td></tr>
<tr><td>종합의견
(과다/적정/과소/
판단불가)</td><td>
<table>
<tr><th>총사업비</th><th>운영비</th><th>수요</th><th>편익</th><th>경제성 분석</th><th>재무성 분석
(운영수지)</th></tr>
<tr><td>과소</td><td>과소</td><td>과대</td><td>과대</td><td>과대</td><td>과대</td></tr>
</table>
➜ 총사업비는 실시설계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나, 운영설비비 등 일부 누락된 비용을 반영할 경우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함
➜ 운영비는 유사시설을 활용하여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를 반영하였으나 일부 누락 항목(시설별 유지보수비, 재투자비, 물품구입비등)이 있어 과소추정됨
➜ 시설별 수요 추정 시 체육시설은 규모가 상이한 준거시설을 적용하였고, 도서관 및 문화교육센터 추정 근거 세부내역이 제시되지 않음
➜ 과다 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부적정한 단가 및 이용요금을 적용하여 편익이 과다 추정되어 B/C 역시 과다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누락된 운영비 항목 추가 시 비용 증가 예상되며, 과다한 수요를 적용하여 운영수지가 과다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td></tr>
</table>

◆ 2023년 4차 △△대 세계▲▲▲센터 건립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구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운영설비비	기타 (각종부담금 등)	예비비
의뢰서	470.20	311.54	54.60	54.34	49.72	-	-
재산정	418.25	261.66	54.60	33.30	30.68	-	38.02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항목</th><th>결과</th></tr>
<tr><td rowspan="4">총사업비</td><td rowspan="4">공사비, 시설부대경비</td><td>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건축비는 조달청 유사사례 단가를 사용하였으나, 기준연도 미제시
➜ 토목공사비는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의 단가(79천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의 단가(4,349천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td><td>O</td></tr>
<tr><td>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 조달청 유사사례 및 단가는 적정하나, 기준연도를 착공 시점(2025년 추정)으로 하여 과다 산정됨
<table>
<tr><th>구분</th><th>건축</th><th>도로</th></tr>
<tr><td>의뢰서</td><td>4,118,181원/㎡</td><td>5,042천원/㎡</td></tr>
<tr><td>출처</td><td>조달청 유사사례(2025년 기준)</td><td>(2025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td></tr>
<tr><td>재산정</td><td>3,429,774원/㎡</td><td>4,338천원/㎡</td></tr>
<tr><td>출처</td><td>조달청 유사사례(2022년 기준)</td><td>(202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td></tr>
</table>
➜ 부지조성비는 의뢰서의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단가(79천원/㎡)를 준용하되, 기준연도를 2022년으로 보정함</td><td>X</td></tr>
<tr><td>3) 용역비, 시설부대비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전체 시설에 대한 공사비(부가세 제외)기준으로 설계비를 추정하였으나, 체험·교육(전시관)에 대해서는 설계비 및 분리수행 위탁비를 추가로 책정하여 과다 추정한 것으로 판단됨</td><td>X</td></tr>
<tr><td>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은 없는가?
➜ 신재생에너지 공사비가 누락되어 반영함</td><td>X</td></tr>
</table>

03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항목</th><th>결과</th></tr>
<tr><td rowspan="5"></td><td rowspan="3">보상비</td><td>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편입필지별 지번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보상비 산정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td><td>판단불가</td></tr>
<tr><td>6)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시유지 및 사유지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td><td>판단불가</td></tr>
<tr><td>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지역 평균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td><td>○</td></tr>
<tr><td>운영
설비비</td><td>8) 운영설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의뢰서에서는 유사사례의 체험·교육(VR 등) 조성 공사비 단가(3,250천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시 제작 및 설치비 단가(3,768천원/㎡)를 산정함
➜ 조달청 유사사례 검토 결과, 운영설비비 단가가 2,325천원/㎡으로 산정되어 의뢰안(50억원) 대비 19억원 감소함</td><td>X</td></tr>
<tr><td>기타
(필요시)</td><td>9) 기타 비용의 항목이 무엇이고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td><td>해당없음</td></tr>
<tr><td></td><td>예비비</td><td>10)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예비비가 반영되지 않음</td><td>X</td></tr>
<tr><td colspan="2">규모의
적정성</td><td colspan="2">11) 규모는 적정한가?
➜ 동종 자치단체 내 문화시설과 비교한 결과 본 시설의 연면적(5,500㎡)은 평균 대비 23.07%이며, 관내 ○○박물관(14,408㎡)대비 작은 수준임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문화시설</th></tr>
<tr><th>본 사업 면적</th><th>유사사례 수</th><th>평균</th><th>최대값</th><th>최소값</th></tr>
<tr><td>특별·광역시</td><td>5,500</td><td>31</td><td>23,832</td><td>86,574</td><td>2,998</td></tr>
</table></td></tr>
<tr><td colspan="2">종합의견</td><td colspan="2">➜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와 예비비를 추가 반영하더라도 적정 공사비 단가 적용, 유사사례 운영설비비를 반영할 경우, 총사업비는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본 검토에서는 조달청 유사사례단가를 기준년도(2022년)로 보정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가 약 50억원 감소하였으며, 조달청 유사사례 단가를 기준으로 운영설비비를 산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및 예비비를 반영하더라도 총사업비는 418억원 수준으로 의뢰안(470억원) 대비 감소함</td></tr>
</table>

◆ 2023년 4차 (가칭)○○○ 어린이학습관 건립사업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구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운영설비비	기타 (각종부담금 등)	예비비
의뢰서	472.84	282.87	107.78	40.20	-	-	42.00
재산정	403.52	236.35	107.78	32.50	-	-	26.89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항목</th><th>결과</th></tr>
<tr><td rowspan="8">총사업비</td><td rowspan="4">공사비, 시설부대경비</td><td>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건축공사비는 유사사례 및 서울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단가에 제로에너지 건축공사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고, 전시시설 설치비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시시설 유사사례에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보정함</td><td>O</td></tr>
<tr><td>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 의뢰안과 검토안은 동일한 유사사례를 활용하였음에도 기준년도가 다르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 적용 방법에 차이가 있어, 검토안 대비 의뢰안 공사비가 16.4% 높아 과다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전체 공급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중복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table>
<tr><th>구분</th><th>건축공사비</th><th>전시시설 설치공사비</th></tr>
<tr><td>의뢰서</td><td>3,546천원/㎡</td><td>3,179천원/㎡</td></tr>
<tr><td>출처</td><td>조달청 공사비정보 광장 유사사례</td><td>조달청 전시시설 사례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td></tr>
<tr><td>재산정</td><td>3,228천원/㎡</td><td>3,179천원/㎡</td></tr>
<tr><td>출처</td><td>조달청 공사비정보 광장 유사사례
(의뢰안과 동일한 유사 사례 적용)</td><td>의뢰안 단가 준용</td></tr>
</table></td><td>X</td></tr>
<tr><td>3) 용역비, 시설부대비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검토안에서는 공사비 감소에 따라 산정금액이 감소됨</td><td>O</td></tr>
<tr><td>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은 없는가?</td><td>O</td></tr>
<tr><td rowspan="3">보상비</td><td>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지 보상비를 산정하였으며, 용지비의 10%를 지장물 보상비로 산정하였음</td><td>O</td></tr>
<tr><td>4)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td><td>해당없음</td></tr>
<tr><td>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td><td>해당없음</td></tr>
<tr><td>운영설비비</td><td>8) 운영설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운영설비비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전시시설 설치공사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td><td>O</td></tr>
<tr><td>기타 (필요시)</td><td>9) 기타 비용의 항목이 무엇이고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td><td>해당없음</td></tr>
</table>

03

구분		항목	결과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전체 사업비의 10%가 반영되어 있으나, 기보상된 용지비에 대한 예비비는 제외되어야 함	X
종합의견		➜ 재추정한 결과 공사비는 기준연도 조정 시 감소하고, 이와 연동하여 용역비, 시설부대비가 감소할 수 있으며, 보상비에 대한 예비비가 제외되면 총사업비는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4차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구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운영설비비	기타 (각종부담금 등)	예비비
의뢰서	489	315	87	43	-	-	44
재산정	395	248	87	32	-	-	28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의뢰안의 공사비는 2022년 기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자료를 이용함	O
		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 의뢰안 및 검토안의 건축공사비 단가와 총공사비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적정하다 판단하기 어려움 - 서울시 자료에 근거한 의뢰안의 공사비는 평균 3,938천원/㎡으로 검토안(3,093천원/㎡) 대비 높은 수준임 (검토안 대비 128%)	X
		3) 용역비, 시설부대비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상기 공사비의 차이로 인해 시설부대비 역시 10억원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함	O
		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은 없는가? ➜ 2022년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제로에너지 추가 공사비가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의뢰안 공사비는 제로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비가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X
	보상비	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본 사업부지는 △△□□신도시 개발사인 ☆☆소유로 △△시가 매입예정임 ➜ △△시와 ☆☆간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 및 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검토안에서는 의뢰서에서 산정한 용지 보상비를 준용함	O
		6)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전체 사업부지(4,859㎡)는 ☆☆ 소유임	X
		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부지매입 협약이 완료됨	해당없음
	운영설비비	8) 운영설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해당없음
	기타 (필요시)	9) 기타 비용의 항목이 무엇이고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해당없음
	예비비	10)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의뢰안의 경우 매입이 확정된 용지비를 포함하여 예비비를 산정함 ➜ 검토안에서는 상기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의 10%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결과, 28억원으로 산정됨	X
종합의견		➜ 공사비 가격기준시점 조정 및 단가보정, 예비비 조정(용지매입비 예비비 미반영) 등을 반영한 결과 총사업비는 500억을 초과 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03

◆ 2023년 4차 ◇◇시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구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운영설비비	기타 (각종부담금 등)	예비비
의뢰서	441.1	300	41	53.1	11	-	36
재산정	487.01	259.58	135.08	37.09	10.99	-	44.27

구분		항목	결과
총사업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형별 공사비 중 복합형체육시설 사례 단가 활용	○
		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 ① 오션 플래닛(면적 8,500㎡):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경우, 15,000원으로 단가가 제시되었지만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검토안으로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를 적용하여 단가를 재산정함 ➜ ② 오션 프런트(면적 660㎡): 세부근거가 미제시 되어있으나, 사업계획(안)을 통해 세부계획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의뢰안을 준용함 ➜ ③ 오션 트레일(면적 600㎡): 오션 트레일 단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검토안으로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의 공유수면 인근 조성된 산책로 8건의 평균 단가를 통해 재산정함 ➜ 의뢰안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 1,056백만원은 세부내역이 미제시되어 적정성 판단이 어려우나, 공급 의무비율 전체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3) 용역비, 시설부대비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의뢰안은 용역비와 시설부대비 산정시 전체 공사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설계비 산정에 적용한 공사비가 세부 공사비 내역과 달라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판단불가
		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은 없는가? ➜ 2021년 이후 조달청 유사사례 단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제로에너지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보상비	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의뢰안의 경우 임야 23,700㎡는 2023.01 공시지가 기준으로 반영되었으나 해당 부지는 도유지로 보상배율을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6)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사업 대상지는 도유지로 제시됨	해당없음
		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의뢰안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 대상지는 도유지이므로 검토안에서는 보상배율(3.27)을 적용하여 재산정함	×

구분		항목	결과
	운영 설비비	8) 운영설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는 일반 수영장 장비의 성격과 구분되는 해양레저를 위한 특수 장비로 판단되어 의뢰안의 운영설비비 11억원을 준용함	O
	기타 (필요시)	9) 기타 비용의 항목이 무엇이고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해당없음
	예비비	10)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의뢰안은 10% 적용됨	O
종합의견		➜ 공사비 단가 조정, 용역비, 시설부대비 재산정,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보완, 보상배율 적용 등을 반영하더라도 총사업비는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사업지연, 공사비 단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500억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함 ➜ 단, 본 사업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이용계획(면적 등) 확인이 어려워 공유수면이 보상비로 고려되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함	

04 센터연구과제

가. 센터기본연구과제 수행 실적

◆ 2023년에는 총 2건의 기본연구과제를 수행

○ 행정안전부와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최근 정책적 이슈에 대응하는 기본연구과제 채택

– 중기발전계획 및 타당성조사 고도화 실행 등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타당성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주제로 과제를 수행

◇ 2023년 센터기본연구과제 수행 실적

연번	유형	과제명
1	연구과제	해상교량 개통으로 인한 섬지역 생활환경 변화 연구
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

◆ 센터연구과제 요약

◇ 해상교량 개통으로 인한 섬지역 생활환경 변화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해상교량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한계점 대두

- 해상교량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통행수단(선박 > 차량) 변화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등 도로사업 관점에서의 분석 방식을 준용하고 있음
- 해상교량이 가지는 높은 비용적 특성, 통행량(인구)이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과 결합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함

해상교량의 다양한 건립 효과에 대한 기초연구 필요

- 해상교량의 건립은 통행시간 또는 혼잡의 절감 외에도 통행 시간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기본적인 통행권을 제공하며, 섬지역의 인구·산업 구조 등 다양한 환경요인의 변화를 유발함
- 이에 해상교량 건설 전/후 비교를 통해 해당 섬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토지이용, 통행, 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확인함

연구의 주요 내용

해상교량으로 인한 섬지역 번화 분석

- 사회경제지표 분석, 통행분포 변화분석, 생활 및 관광기반시설 변화 분석,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변화 분석

섬지역 주민 설문조사

- 섬 생활 및 생활기반시설 관련 만족도, 소득 및 교통부 문 변화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해상교량으로 인한 섬주민의 생활변화를 고려한 방법론 개선 필요

- 해상교량으로 인한 섬 지역의 소득과 재산가치 증가
- 통행 횟수 증가 및 통행의 자율성 증대

지속적인 섬 지역 통계자료 축적을 통한 연구 필요

- 섬 지역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많은 분석이 어려운 실정
- 지속적인 섬 지역 통계를 축적하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04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LIMAC CVM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의 필요성 증대

- LIMAC CVM 가이드라인(지침)의 부재로 인한 타당성조사의 일관성 확보 한계
  -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CVM 적용 시 분석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분석과정 및 결과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CVM 적용상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 필요
  - CVM 적용 전 과정(설문조사 단계부터 WTP 추정 단계까지)에 걸쳐 다양한 쟁점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쟁점사항들에 대한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됨

CVM 추정 및 분석과정, 특히 WTP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 증대

- WTP 추정과정 및 분석모형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
  - LIMAC에서 기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CVM을 수행하는 방법론(특히 설문조사)에 초점을 둠에 따라 설문 이후 그 결과를 모형화하여 최종 목적인 적정 WTP를 도출하는 분석과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CVM 관련 쟁점사항들이 WT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필요
  - CVM이 적용된 LIMAC 타당성조사과제의 DB를 활용, 최근 제기되고 있는 관련 쟁점사항들이 WTP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함으로써 CVM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구득이 필요함

연구의 주요 내용

CVM 관련 이론적 고찰 및 DB구축

- CVM 관련 이론 고찰
- CVM 적용 조사사업의 DB구축(LIMAC & PIMAC)

CVM의 쟁점사항 및 영향요인 도출

- CVM 쟁점사항
- WTP 영향요인 도출

WTP 영향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 메타분석을 활용한 WTP 영향요인 식별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CVM 적용 관련 쟁점별 개선사항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CVM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서의 활용성

- CVM 분석과정에 대한 개선 및 고도화의 단초 마련
  - 여러가지 제약 하에서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WTP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CVM의 분석과정(특히 모형)에 대한 개선 및 고도화의 단초를 마련함
- 분석결과의 범용성 확보
  - LIMAC과 PIMAC의 CVM 적용 대상 사업들에 대한 DB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DB를 활용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로서 범용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실증분석의 한계 및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추가연구 필요

- 메타분석의 한계
  - 제한된 관측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이 수행됨에 따라 당초 관심을 두었던 주요 변수들의 유의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CVM 적용 타당성조사과제의 지속적인 DB화가 필요함)
-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추가연구 필요
  - CVM 관련 가이드라인은 단기간이 아닌 연차별 명확한 과제의 목표를 기초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후속과제로 CVM 적정 영향권 설정 및 계량분석 등을 제안함)

04

나. 타당성조사 지침연구 수행 실적

◆ 2023년에는 총 3건의 타당성조사 지침연구를 수행

○ 다변화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유형별 조사방법론 탐색 등 타당성조사 품질 제고 및 고도화를 위한 지침연구 3과제 수행

◇ 2023년 타당성조사 지침연구 수행 실적

연번	유형	과제명
1	타당성조사 지침연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지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2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확대개편을 위한 지침 연구
3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 연구

◆ 타당성조사 지침연구 과제 요약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지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는 수요 및 편익 추정 그리고 정책적 분석 등을 위하여 각종 설문조사가 수행되어 왔으나, 타당성조사에서의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설문지가 과제 별로 명확한 설명 없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있음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수행된 기존 연구들의 경우 타당성조사 사업유형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설문작성의 전 과정에서 연구진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함
- 본 연구에서는 LIMAC에서 수행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활용되는 설문조사의 작성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방법, 설문조사의 수행과정, 리맥연구진, 외부연구진, 설문조사기관 등 참여 주체별 역할 및 유의사항 등 설문 작성 방법을 연구, 제시함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조사 개선방향 검토

- 그간 LIMAC에서 수행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조사 현황 검토 및 타당성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6가지 개선방향이 도출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개선방향

- 응답자의 인적사항 수집정보 최소화
- 설문조사 대상연령 기준 수립
- 조사 방법 및 조사 부수 설정
- 설문지 본문 작성 시 유의사항
- 보기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 설문조사 수행 과정 및 참여주체별 역할 제시
- 설문조사 수행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제시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중 특히, 산업부문에 대한 기업입주 수요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비사용가치 중심의 일반인 설문조사 외에 아직까지 명확한 세부 수행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이용의향 및 지불의향금액 중심의 사용가치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단위사업별 사업유형 및 세부 사업별 특성이 다름에서 기인되는 사업별 특수성을 감안한 설문조사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에서 사업유형별 설문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사항 및 기준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04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확대개편을 위한 지침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모색 필요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후 6년 경과 시점에서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점검 필요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심사 이후 사업관리 제도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업 추진 이력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 담보 문제, 이로 인한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
- 이력관리 수행기관의 실무적 문제를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 필요
  -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접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필요

연구의 주요 내용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실태 및 주요쟁점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가능
- 제도를 둘러싼 주요쟁점 검토결과, 대상, 범위, 관리방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 및 단계적 발전방안 도출

- 델파이 결과, 이력관리 대상 단계적 확대 및 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적 수단 강화 필요
- 전문가 델파이 결과 및 제도를 둘러싼 환경, 각 대안별 영향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단계적 발전방안 제시

투자사업 이력관리 매뉴얼 주요 개선사항 도출 및 매뉴얼(안) 마련

-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세부작성지침 필요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 제도 발전방안으로 1~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제도의 대상 및 범위 확대 및 강화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대상 및 범위는 1단계 기반조성(전문기관 지정,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자료수집체계 및 방식 명확화 등) 이후 2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3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유형별 확대를 제시함
  - 중점관리사업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대상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하는 2단계 시점부터 운영관련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활용적 측면에서는 향후 자료 공개 우선 실시 후 2단계부터 사업유형별 컨설팅 제도 단계적 실시를 목표로 하며, 자료공개 및 컨설팅 제도 안정화 및 보상체계가 보편화되면 합동평가, 재정분석 등 이미 정착된 다른 제도에 추가하여 이력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향후 제도 확대 및 강화와 더불어 향후 차세대 이호조 활용 이후 변경사항 반영 필요
  - 현행 이력관리제도의 대상 및 범위, 기존 자료제출방식 하에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으나, 향후 제도 발전과 더불어 차세대 이호조를 투자심사 단계부터 활용하여 이력관리까지 연계할 시 이력관리 자료 제출 방식, 주기, 항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사항을 반영한 매뉴얼 개정 필요

다. 센터 정책과제

◆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대응 및 수요와 관련하여 중앙의뢰심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설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1건의 정책과제를 수행함**

◇ 2023년 센터 정책과제 수행 실적

연번	유형	과제명
1	센터정책과제	자체타당성 검토 개선 연구: 운영수지 분석을 중심으로

04

◆ 센터 정책과제 요약

◇ 자체타당성 검토 개선 연구: 운영수지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 자체타당성 검토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투자심사 단계에서 운영수지 분석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반려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계획하고 있음
- 자체타당성 검토 수행실적의 지속적인 증가
  - LIMAC은 타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자체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해당 자체타당성 검토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매년 평균 약 150건 검토)

자체타당성 검토의 개선 및 투자심사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보다 객관적인 자타검토 체계 마련 필요
  - 그간 LIMAC이 수행한 방대한 양의 검토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체타당성 검토를 위한 체계 및 기준은 모호한 실정
  -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도개선 예정인 '운영수지 분석'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자체타당성 검토의 개선을 통한 투자심사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자체타당성 검토의 중요도 및 LIMAC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타당성 검토의 개선을 통한 투자심사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연구의 주요 내용

운영수지 분석의 이론적 고찰 및 현황 분석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 분석

- 분석의 전제 및 DB구축
- 운영비용 및 수입의 적정 원단위 및 범위 도출
- 원단위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자타검토의 내실화

- 의뢰서 운영비용 원단위와 본 연구의 원단위 비교를 통해 명확한 검토결과 제시 가능
  - 기존 판단불가로 갈음되었던 검토의견에 대해 명확한 검토결과 제시가 가능해졌으며, 항목의 누락에 대해 과소로 판정하였던 부분 역시 금액 기준으로 판단 가능

한계 및 보완사항

- 특수시설유형 및 체육시설에 대한 원단위 보완
  - 부지면적 기준 대상사업(종합운동장)과 복합시설에 대한 원단위 산정 및 보완 필요
  - 문화시설 대비 분석 샘플 수가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DB확보 및 원단위 갱신 필요
- 운영수입 분석항목의 구체화
  - 운영수입 원단위 활용을 위해서는 직영/위탁, 이용객 수, 운영수입 등의 추가정보가 필요하므로 향후 검토 의뢰서상 운영주체의 구분과 시설별 이용객 수(예측치)의 제시가 요구됨
- 도출된 원단위의 지속적인 DB화와 갱신
  - 현재의 행안부 공공시설운연현황은 가장 최신자료인 2021년부터 운영비용과 운영수입을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자료 구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원단위의 갱신 및 DB화 필요

05 조사관련 사업

가. 공무원 교육

◆ 교육 목적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제도, 이력관리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활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고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 교육 내용

○ 주 교육 내용은 타당성조사 방법론,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투자심사 제도이며, 교육이 끝난 후 교육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 내용의 이해를 제고함

– 타당성조사 부문에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이력관리 제도를 소개함

– 투자심사 제도 부문에선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 변경된 제도의 배경과 내용, 제도 변경에 따른 실무 변경 사항과 심사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소개함

◆ 교육 실적

○ 공무원 교육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도권 1회, 비수도권 2회 및 지자체 요청 4회 등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총 439명이 수강함

◇ 차수별 교육 신청 및 수강인원

구분	시기	교육명	수강 인원
1차	4/3 ~ 4/5	2023년 제1차 공무원 교육	130
2차	4/6 ~ 4/7	전남지역 투자심사 직무 교육	21
3차	4/26 ~ 4/27	보령시공무원 교육	63
4차	6/27 ~ 6/28	신안군 공무원 교육	63
5차	11/17	2023년 제2차 공무원 교육	92
6차	11/29 ~ 11/30	재정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워크숍(교육)	70
합계			439명

05

◇ 공무원 교육 시간표 예시(비수도권 공무원 교육)

교육 내용	시간		발표
접수	13:00~13:10		
국민의례	13:30~13:35('5)		
인사말	13:35~13:40('5)		LIMAC 조기현 소장
타당성조사 개요 및 방법론	강의	13:40~14:30('50)	LIMAC (김남주 재정투자조사부장)
	질의응답	14:30~14:40('10)	
휴식 시간	14:40~14:50 ('10)		
산업단지	강의	14:50~15:20('30)	LOMAC (김재영 평가부장)
	질의응답	15:20~15:30('10)	
이력관리제도	강의	15:30~16:20('50)	LIMAC (함윤주 재정투자평가부장)
	질의응답	16:20~16:30('10)	
휴식 시간	16:30~16:40('10)		
투자심사제도	강의	16:40~17:30('50)	행정안전부 (심창수 재정정책과 사무관)
	질의응답	17:30~17:40('10)	

◇ 공무원 교육 시간표 예시(수도권 공무원 교육)

교육 내용		시간		발표
접수		12:30~12:50		
국민의례		12:50~12:55('5)		
인사말		12:55~13:00('5)		LIMAC 조기현 소장
자체 타당성조사 검토		강의	13:00~14:00('60)	LIMAC (송지영 연구위원)
		질의응답	14:00~14:10('10)	
이력관리제도		강의	14:10~15:10('60)	LIMAC (함윤주 재정투자평가부장)
		질의응답	15:10~15:20('10)	
휴식 시간		15:20~15:30 ('10)		
SPC 또는 PFV 설립을 통한 투자사업과 공유재산 위탁개발		강의	15:30~16:30('60)	LIMAC (김상기 기획총괄부장)
		질의응답	16:30~16:40('10)	
투자심사	'24년 투자심사 운영계획	강의	16:40~17:10('3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설명	강의	17:10~17:40('30)	
	-	질의응답	17:40~18:00('20)	
마무리		18:00~18:10 ('10)		

05

◇ 공무원 교육 현장 사진

05

나. 내부역량강화

◆ 내부역량강화 목적

○ 지방재정 부문 및 기타 분야 등의 전문가 초청 교육을 통해 LIMAC 구성원의 연구 역량 및 전문성 제고하고자 하며, 유관 기관 관계자 초청 교육을 통해 배경 및 전문 지식을 고도화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주제

○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기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분야 및 분석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이력관리제도 수행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 실적

○ 2023년 내부역량강화는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타당성조사 방법 고도화(R&D사업, 수요 및 편익, GIS, 지방재정 여건 분석 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이력관리제도 수행방안 등 LIMAC의 역할과 전문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음

◇ 2023년 LIMAC 내부역량강화 실적 요약

번호	시기	발제자	주제
1	1/25(수)	허은진 지방교육재정연구원 박사	GIS 활용 사례
2	2/27(월)	김남주 LIMAC 재정투자조사부장	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관련 내부 역량 교육
3	3/27(월)	김남주 LIMAC 재정투자조사부장	타당성조사 고도화를 위한 중기 연구계획(안)
4	5/30(화)	서정섭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의 현실과 사업 타당성조사 방법(1차)
5	7/3(월)	이주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편익의 적정 영향권 설정방안 (문화체육 및 공원 등)
6	7/25(화)	서정섭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의 현실과 사업 타당성조사방법(2차)
7	8/28(월)	김상기 LIMAC 기획총괄부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8	9/12(화)	남덕우 한양대학교 교수	수요 및 편익추정 계량모형
9	10/17(화)	김용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박사	R&D 사업 조사사업 방법론
10	11/6(월)	송지영 LIMAC 연구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 개선방안 연구
11	12/4(월)	함윤주 LIMAC 재정투자평가부장	이력관리제도 및 수행방안

다. 세미나

◆ 세미나 개최 목적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및 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세미나 주요 주제

○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 제도 발전과제 및 타당성조사 관련 방법론 등 사안별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술 세미나를 개최

◆ 개최 형식

○ 단독 및 관련 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등)와 공동 개최

◆ 세미나 개최 실적

○ 2023년에 총 6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학술세미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전문기관 세미나,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이민행정학회와의 공동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함

◇ 2023년 LIMAC 세미나 실적 요약

NO	일시	장소	행사명	주제
1	3월 31일 ~ 4월 1일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뉴노멀 전환기, 지방재정의 정책과제 (LIMAC·LOMAC 공동세션 진행)
2	8월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한국지방재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개편방안(LIMAC 특별세션 진행)
3	10월 24일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학술 세미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학술 세미나
4	12월 8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재정긴축시기, 지방재정의 적극적 대응과제(LIMAC 세션 진행)
5	12월 15일	성결대 학술정보관	한국이민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인구감소 시대 이민행정의 역할 (LIMAC 특별세션 진행)
6	12월 12일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 회의실	LIMAC 및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공동 세미나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전전략

06 조사지원 사업

가.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회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조사과제 운영지침」 제16조에 의거한 자문기관임**

○ 자문위원회는 1) 조사과제에 관련한 자문 및 평가, 2) 연구과제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음

◆ **지방투자사업에 탁월한 식견이 있는 5개 분야(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행정 및 재정 등, 출자 및 출연)의 전문가 48인의 비상근위원체제로 운영함**

○ 2023년 타당성조사 과제선정위원회, 외부연구진선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과제 대상 사업 및 외부연구진 선정

○ 타당성조사과제, 연구과제 및 지침연구의 보고회의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조사과제 및 연구과제의 평가 수행

◆ **2023년 12월에는 자문위원회를 진행함**

○ 자문위원회에서는 LIMAC의 2023년도 성과보고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센터 현안에 대해 논의함

◇ 2023년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

구 분	일시	장소	주용 논의 내용	참석자
LIMAC 자문위원회	2023.12.21.	양재 aT센터 창조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황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보고 및 자문	LIMAC 19인 행정안전부 1인 포함 자문위원 21인

◇ 상반기 자문위원회 주요 자문 내용

구 분		주요 자문 내용
조사사업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 질적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인력 규모에 따른 수행력과 우수사례 검토 필요함 • 중간 및 최종보고 단계에서 연구의 방향을 변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착수회의 및 초기 자문회의에서 폭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함 • 보고서 품질 관리를 위해 외부연구진 수수료(단가)를 인상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과는 무관하게 타당성조사가 진행된다면, 타당성조사의 유용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타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지역발전기여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내부 고민이 필요함
	투자사업 이력관리	• 타당성조사 이후 사업에 대해 이력관리 및 추적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성과를 발표하는 시스템을 제안함 • 이력관리 전담팀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사업 평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빅테이터 기반 분석 확장,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조사 데이터 관리 지침 마련 등 고민이 필요함 • 이력관리가 내부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논거가 되고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연구과제/ 지침 개정	• 타당성조사 방법론에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정합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감한 실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의 새로운 영역의 조사 과제 운영지침이나 평가 기준 등이 많이 부재하다고 느낌 • 24년도 핵심 연구과제로 타당성조사 이력(10년동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타	조직 및 운영	• LIMAC의 실적 초과 달성에 대해 질적 손해 등 우려스러움이 있어 계획과 유사하게 실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하며, 부족한 정원 충원을 통해 내실화가 필요 • 새로운 사업 유형의 다양화로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의 위촉이 필요함 • LIMAC 홍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LIMAC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을 제안함 •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강화를 제안함
	원주 이전/ 회의실 운영	• 원주 이전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 및 지자체의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 전용회의실, 전담센터를 서울에 만드는 것 등에 대해 제안함

06

나.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 **COVID-19 장기화에 대응하면서 컨설팅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행된 "TOM(탐)나는 컨설팅"을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추진함**

○ TOM(탐)나는 컨설팅의 '탐'의 음은 貪에서 따왔으며 Two-way On and off Meeting의 약자로 ① 찾아가는, ② 찾아오는 ③ 온라인 총 3가지의 방식 중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택1 하여 추진

◆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의 심화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투자사업을 지원함**

○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의 사업계획 및 추진상 고려사항, 타당성조사 분석 내용과 결과 해석 및 문제점 교육, 투자심사 결과 재심사 및 조건부 사업에 대한 보완 사항 자문,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방식 교육 등

○ 지방투자사업 분석 및 컨설팅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투자사업 지원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방안 등

◆ **2023년 TOM(탐)나는 컨설팅은 1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하였으며, 정기(1~8차) 및 수시 기간 동안 총 173건의 컨설팅을 수행함**

○ 2023년 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교육 시 TOM(탐)나는 컨설팅을 함께 수행함(12건)

◇ 2023년 차수별 컨설팅 수행 실적

구분	컨설팅 기간	수행 건수(건)
1차	1월 2째 주(1월 9일~1월 13일)	5
2차	3월 2째 주(3월 6일~3월 10일)	5
3차	4월 2째 주(4월 3일~4월 7일)	15
4차	6월 2째 주(6월 5일~6월 9일)	10
5차	7월 1째 주(7월 3일~7월 7일)	5
6차	8월 2째 주(8월 7일~8월 11일)	2
7차	9월 4째 주(9월 18일~9월 22일)	4
8차	11월 3째 주(11월 01일~11월 17일)	4
수시	수시 컨설팅	111
	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교육시 컨설팅	12
합계	-	173건

다. 홍보

◆ **2022년도 연차보고서 발간**

○ 2020년에 수행한 LIMAC 5주년 백서 발간(2015-2019년) 이후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

◆ **지속적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의 리빌딩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LIMAC 주요 업무와 행사 등 홍보 수행

◇ 2022년 연차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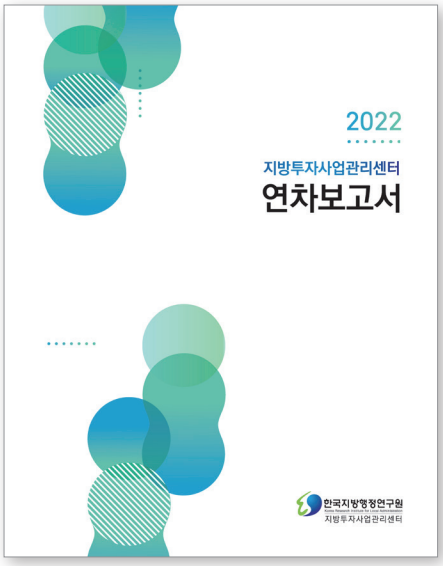

◇ 홈페이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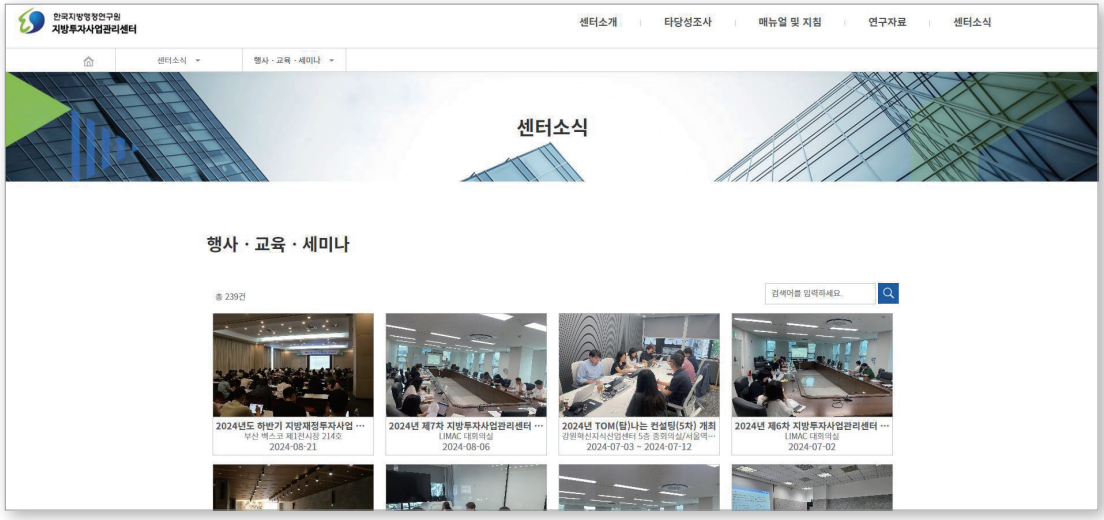

PART

III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성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이력관리 백서

내부 지원사업 효과

0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 전체 설문응답자 부서 현황은 사업부서 61%, 예산부서 33%, 기타(공투센터 등) 6%로 나타남
- 관련 업무의 담당 기간은 6개월 이하 34%, 1년 미만 21%, 1~2년 28%, 2~3년 8%, 3년 이상 8%로 나타남
- LIMAC 교육의 참석 경험의 응답 결과, 참석 경험이 전혀 없는 인원이 86%로 응답자의 대다수는 교육을 처음 수강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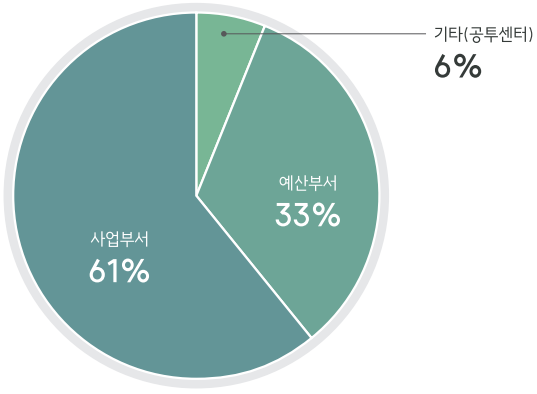

교육 참여자 소속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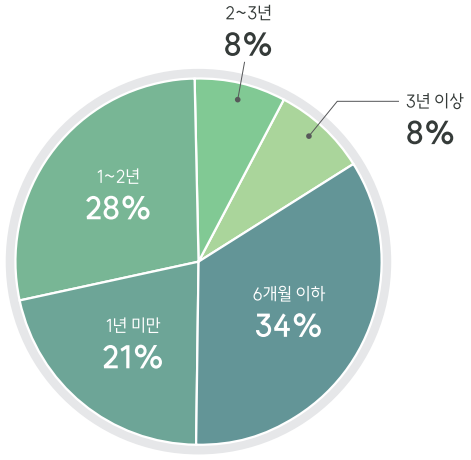

관련 업무 담당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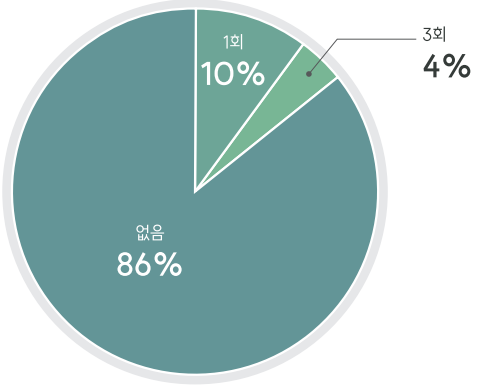

LIMAC 교육 참석 경험

01

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련 사항

- 응답자 50%는 교육 참석 이전에도 LIMAC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50%는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88%가 LIMAC 타당성조사 의뢰 경험이 없으며, 11%는 1회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46%는 LIMAC 홈페이지에 방문한 경험이 있지만, 54%는 방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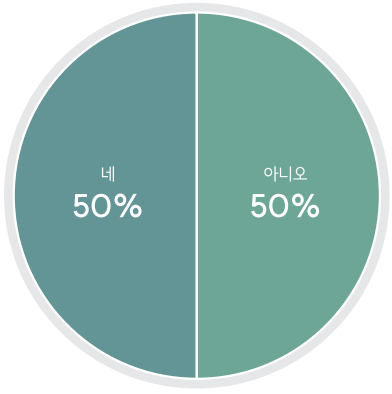

LIMAC 인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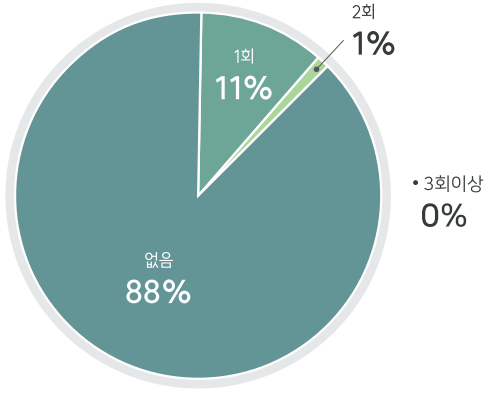

LIMAC 조사 의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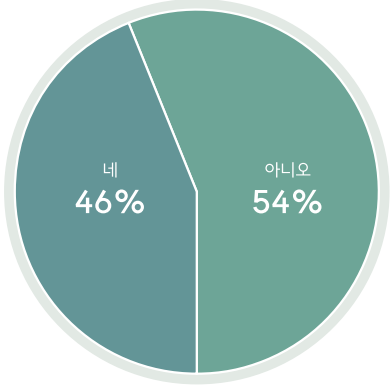

LIMAC 홈페이지 방문 유무

3) 공무원 교육 방식 선호도

◆ 공무원 교육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2%가 집합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18%는 온라인 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함

○ 온라인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접근성 제고, 이동시간 절약과 반복 학습이 가능한 부분이 언급되었음

○ 집합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온전히 강의에 집중할 수 있고 질의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해도와 강의 전달력이 온라인 교육 대비 더욱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장 접근 편의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29%가 매우 만족, 48%가 만족, 23%는 보통, 1%는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 내용으로 교육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했으며, 강의장을 찾기 어려움, 난방 문제, 필기를 위한 테이블의 불편함, 주차 문제 및 소음 문제를 기술하였음

4) 공무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 강의 내용과 강의 참여 목적의 적합도를 물어보는 교육 내용의 적정성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4%가 매우 만족, 58%가 만족, 8%가 보통으로 응답함

◆ 집합 교육 시간의 적절성 조사 결과, 24%가 매우 만족, 53%가 만족, 18%가 보통, 3%가 불만족 및 2%가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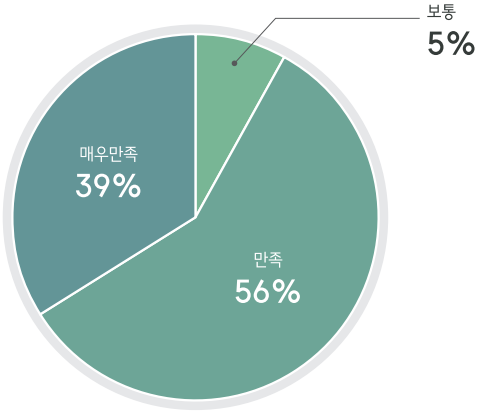

교육 내용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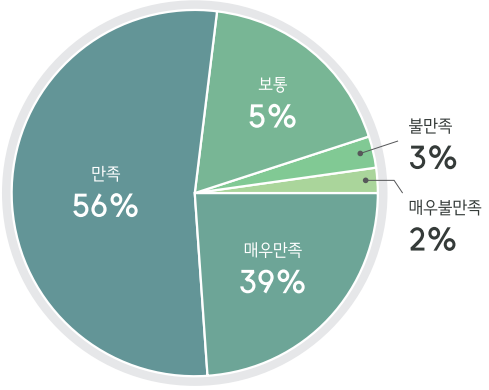

교육 시간의 적절 여부

5)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 교육 내용의 활용성

○ 자체타당성조사 검토가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91%로 조사됨

○ 이력관리제도가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83%로 조사됨

○ SPC 또는 PFV 설립을 통한 투자사업과 공유재산 위탁개발이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97%로 조사됨

○ 2024년 투자심사 운영계획이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88%로 조사됨

○ 지방재정법 개정안 설명이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86%로 조사됨

◇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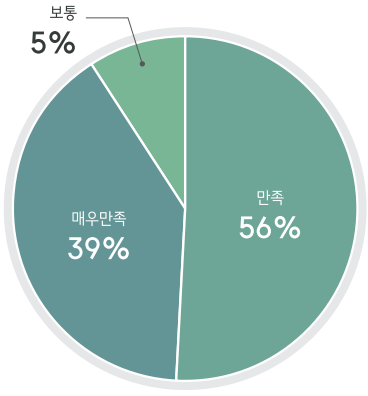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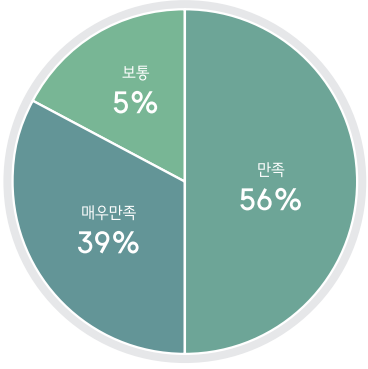

투자심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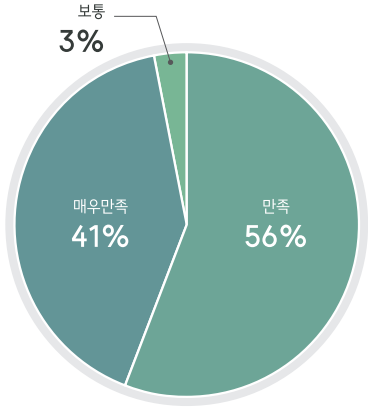

SPC 또는 PFV 설립을 통한
투자사업과 공유재산 위탁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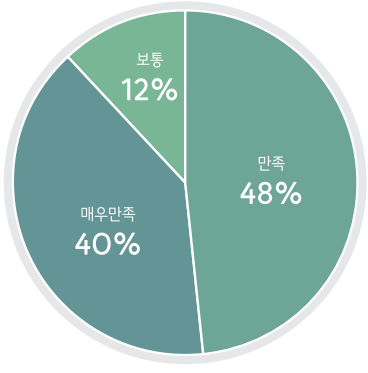

2024년 투자심사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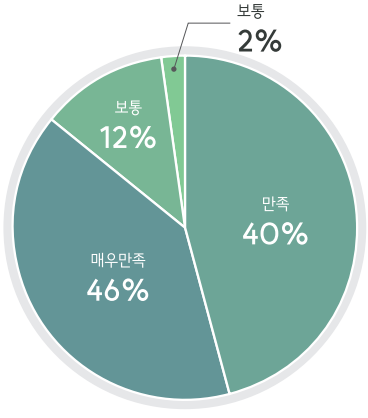

지방재정법 개정안 설명

◆ 과목별 교육 난이도

○ 자체타당성조사 검토의 난이도는 응답자 42%가 매우 만족, 49%가 만족, 9%가 보통으로 응답함

○ 이력관리제도의 난이도는 응답자 38%가 매우 만족, 48%가 만족, 14%가 보통으로 응답함

○ SPC 또는 PFV 설립을 통한 투자사업과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난이도는 응답자 43%가 매우 만족, 48%가 만족, 10%가 보통으로 응답함

○ 2024년 투자심사 운영계획의 난이도는 응답자 42%가 매우 만족, 44%가 만족, 14%가 보통으로 응답함

○ 지방재정법 개정안 설명의 난이도는 응답자 42%가 매우 만족, 44%가 만족, 14%가 보통으로 응답함

◇ 과목별 교육 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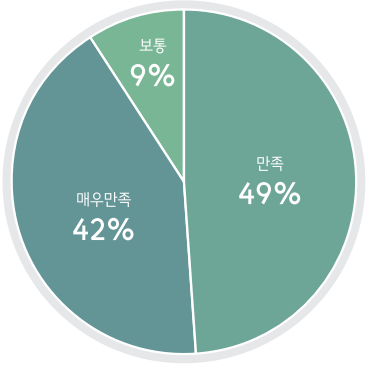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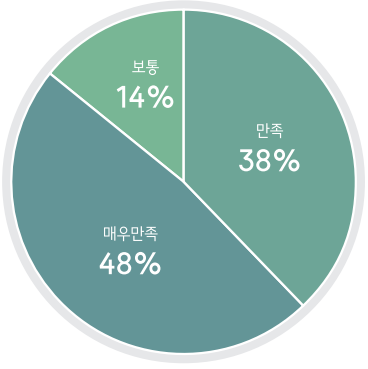

이력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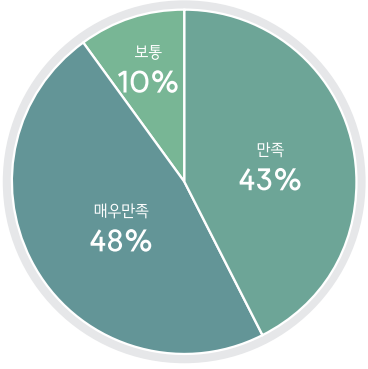

SPC 또는 PFV 설립을 통한
투자사업과 공유재산 위탁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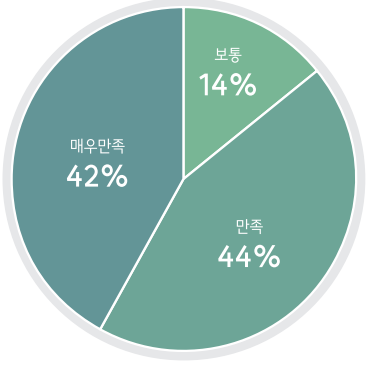

2024년 투자심사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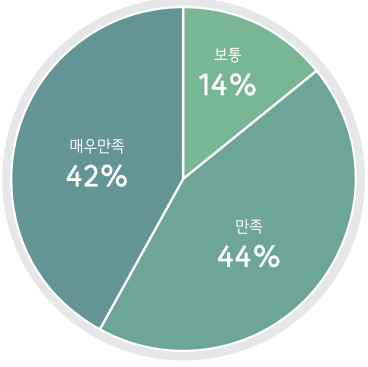

지방재정법 개정안 설명

01

◆ 교육의 좋은 점과 개선사항

◇ 교육의 장점과 개선사항

장 점

- 강의 내용 및 관련 업무 종사자와의 교류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작성시 유의사항
- 적절한 교육 난이도
- 열정적인 교육자의 강의
- 대면 교육에 따른 집중력 향상
- 훌륭한 강의 자료
- 질의응답 시간
- 다양한 교육 주제와 내용

개선 사항

- 사전에 질문 사항을 받은 후 일관 답변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 관리자 중심의 교육 개설 요청
- 가급적 시간에 여유가 있는 12월 교육 요청
- 기초자치단체의 당월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한 교육 개설
- 익숙하지 않은 재정 용어 및 경제성 분석 용어 설명 요청
- 강의장 시설에 대한 불만족(마이크 소리, 의자, 테이블 등)
- 교육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까웠으면 좋겠음
- 1박 2일(또는 교육 시간 증가)로 진행하여, 더욱 자세하게 배웠으면 좋을 듯
- 온라인 교육 병행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 요청
- 더욱 심도 깊은 내용이 필요함

나. 2023년 TOM(탐)나는 컨설팅

1) TOM(탐)나는 컨설팅 개요 및 수행 현황

◆ COVID-19 장기화에 대응하면서 컨설팅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행된 "TOM(탐)나는 컨설팅"을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추진함

◆ 2023년 TOM(탐)나는 컨설팅은 1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하였으며, 정기(1~8차) 및 수시 기간 동안 총 173건의 컨설팅을 수행함

◇ 2023년 차수별 컨설팅 수행 실적

구분	컨설팅 기간	수행 건수(건)
1차	1월 2째 주(1월 9일~1월 13일)	5
2차	3월 2째 주(3월 6일~3월 10일)	5
3차	4월 2째 주(4월 3일~4월 7일)	15
4차	6월 2째 주(6월 5일~6월 9일)	10
5차	7월 1째 주(7월 3일~7월 7일)	5
6차	8월 2째 주(8월 7일~8월 11일)	2
7차	9월 4째 주(9월 18일~9월 22일)	4
8차	11월 3째 주(11월 01일~11월 17일)	4
수시	수시 컨설팅	111
	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교육시 컨설팅	12
합계	-	**173건**

◇ 2023년 컨설팅 리스트

순번	차수	시도	시군구	사업명	장소	문의유형
1	1차-수시	충남	서산시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사업	서울	찾아오는
2	1차-수시	전북	부안군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3	1차-수시	강원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태백시	찾아가는
4	1차	강원	강릉시	사격장 이전 및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원주	찾아오는
5	1차	전남	본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	원주	찾아오는
6	1차	충남	본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7	1차	전남	보성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성	찾아가는
8	1차	경기	본청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2단계 사업	서울	찾아오는
9	1차-수시	강원	평창군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원주	찾아오는
10	1차-수시	제주	제주시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서울	찾아오는
11	1차-수시	경북	김천시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원주	찾아오는
12	1차-수시	경기	오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서울	찾아오는
13	1차-수시	경기	성남시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공사	서울	찾아오는
14	1차-수시	대전	본청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서울	찾아오는
15	1차-수시	강원	강릉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16	1차-수시	경기	안산시	시민시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	서울	찾아오는
17	2차	경기	부천시	부천역 남부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서울	찾아오는
18	1차-수시	부산	본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9	1차-수시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 구민행복센터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20	1차-수시	강원	강릉시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21	1차-수시	전남	목포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22	1차-수시	경기	고양시	시청사 이전 사업	서울	찾아오는
23	1차-수시	경북	김해시	김해 시립 김영원 미술관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24	2차	전남	남해군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서울	찾아오는
25	2차	경기	본청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26	2차	강원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원주	찾아오는
27	2차	경남	창원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28	2차-수시	충남	본청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29	2차-수시	대전	본청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온라인	온라인
30	2차-수시	경기	성남시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공사	원주	찾아오는
31	2차-수시	경기	시흥시	시흥시 시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01

순번	차수	시도	시군구	사업명	장소	문의유형
32	2차-수시	강원	태백시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	원주	찾아오는
33	2차-수시	충북	진천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원주	찾아오는
34	2차-수시	경기	안산시	사동지구 도시혁신지구	서울	찾아오는
35	2차-수시	경기	본청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원주	찾아오는
36	2차-수시	경북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37	2차-수시	전남	광양시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38	2차-수시	충북	청주시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	원주	찾아오는
39	3차	강원	양구군	양구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강릉	찾아가는
40	3차	강원	고성군	고성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강릉	찾아가는
41	3차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강릉	찾아가는
42	3차	강원	본청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강릉	찾아가는
43	3차	강원	춘천시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강릉	찾아가는
44	3차	강원	원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강릉	찾아가는
45	3차	강원	삼척시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강릉	찾아가는
46	3차	강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강릉	찾아가는
47	3차	강원	동해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강릉	찾아가는
48	3차	강원	태백시	2023~2025년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강릉	찾아가는
49	3차	강원	횡성군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	강릉	찾아가는
50	3차-수시	경기	부천시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51	3차-수시	충남	아산시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52	3차-수시	충남	천안시	경부선 천안역사 시설개량사업	원주	찾아오는
53	3차-수시	경남	진주시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54	3차	전남	순천시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보성	찾아가는
55	3차	전남	순천시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보성	찾아가는
56	3차	전남	보성군	남해권역 보성벌교 해양생태과학과 건립	보성	찾아가는
57	3차	전남	보성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보성	찾아가는
58	3차-수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59	3차-수시	경기	성남시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원주	찾아오는
60	3차-수시	경남	진주시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진주	찾아가는
61	3차-수시	경남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진주	찾아가는
62	3차-수시	경남	진주시	제2바이오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진주	찾아가는

순번	차수	시도	시군구	사업명	장소	문의유형
63	3차-수시	충남	본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64	3차-수시	서울	노원구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서울	찾아오는
65	3차-수시	제주	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옥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66	3차-수시	충남	금산군	2023년 제41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서울	찾아오는
67	3차-수시	경기	부천시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68	4차	대전	본청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2단계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69	4차	서울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점프'건립	서울	찾아오는
70	3차-수시	전남	해남군	전남 해남 수상공연장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71	3차-수시	전남	신안군	전남 신안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자원화	서울	찾아오는
72	4차	경기	안산시	시민시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	서울	찾아오는
73	3차-수시	대전	서구	가장동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74	4차	충남	부여군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75	4차	경남	창원시	창원 안전복합체험관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76	4차	서울	본청	서울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 (가칭)	서울	찾아오는
77	4차	부산	동래구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78	4차-수시	대구	본청	1호선 차량 및 열차제어시스템 교체사업	원주	찾아오는
79	4차	강원	본청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80	4차	강원	태백시	강원 태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원주	찾아오는
81	4차-수시	충남	공주시	금강(어천~죽당) 정원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82	4차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83	4차-수시	경북	본청	프로젝트 계림 추진을 위한 미디어아트 뮤지엄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84	4차-수시	울산	울주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울	찾아오는
85	4차-수시	경기	본청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서울	찾아오는
86	4차-수시	부산	본청	명지글로벌 캠퍼스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87	4차-수시	울산	중구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온라인	온라인
88	4차-수시	충남	본청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체도입시설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89	4차-수시	강원	홍천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구축	원주	찾아오는
90	4차-수시	경기	본청	지방도 321호선 용인 완장~서리 도로 확포장공사	서울	찾아오는
91	4차-수시	경기	본청	지방도 310호선 화성 발산~수면 도로 확포장공사	서울	찾아오는
92	4차-수시	경북	경주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서울	찾아오는
93	4차-수시	서울	본청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서울	찾아오는

순번	차수	시도	시군구	사업명	장소	문의유형
94	5차	경기	양주	양주역 환승주차장 및 교통센터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95	4차-수시	서울	본청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 사업	서울	찾아오는
96	5차	경기	여주	여주 현암1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주	찾아오는
97	5차	경북	경주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서울	찾아오는
98	4차-수시	서울	노원구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서울	찾아오는
99	5차	경기	여주	여주역세권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울	찾아오는
100	5차	광주	본청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사업	서울	찾아가는
101	5차-수시	전북	전주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및 권역재활병원 연계 건립 사업	서울	찾아오는
102	5차-수시	충북	단양	단양군 수변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원주	찾아오는
103	5차-수시	전남	구례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	서울	찾아오는
104	5차-수시	대전	서구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온라인	온라인
105	5차-수시	서울	노원구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서울	찾아오는
106	5차-수시	충북	옥천	옥천군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07	5차-수시	부산	본청	부산진구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서울	찾아오는
108	7차-수시	경남	창원시	북부순환도로(2단계)개설	서울	찾아오는
109	5차-수시	전북	임실	임실 정주 활력 복합센터	서울	찾아오는
110	5차-수시	전남	보성군	주월산 에코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111	6차-수시	경기	양주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12	6차-수시	충북	진천시	백곡호 가람보행교 건설사업	서울	찾아오는
113	5차-수시	강원	춘천시	춘천 대관람차 조성사업	원주	찾아오는
114	5차-수시	전남	함평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115	6차	제주	서귀포	서귀포의료원 병원 증축사업	서울	찾아오는
116	6차-수시	충남	본청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서울	찾아오는
117	6차-수시	서울	본청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기본계획	서울	찾아오는
118	6차-수시	경기	오산	오산 예비군훈련장 개발사업	서울	찾아오는
119	6차-수시	강원	양양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 조성사업	원주	찾아오는
120	6차-수시	경기	오산	세교 터미널 부지 활성화	서울	찾아오는
121	6차-수시	충북	제천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원주	찾아오는
122	6차	경남	진주시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123	7차	전북	정읍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온라인	온라인
124	6차-수시	강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원주	찾아오는

01

순번	차수	시도	시군구	사업명	장소	문의유형
125	6차-수시	강원	본청	강원학사(관악) 신축·이전 사업	원주	찾아오는
126	6차-수시	인천	본청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127	7차	부산	연제구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온라인	온라인
128	6차-수시	경기	안양	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29	6차-수시	대구	수성구	수성구 신청사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130	6차-수시	대구	본청	군위 복합휴양단지 조성 사업	서울	찾아오는
131	6차-수시	전남	남원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서울	찾아오는
132	7차-수시	제주	본청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133	7차	경기	성남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서울	찾아오는
134	8차-수시	경기	화성시	농수산대학 유휴부지 문화예술타운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35	8차-수시	경기	화성시	화성시 테마(어린이) 과학관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36	8차-수시	경기	화성시	화성시 공룡(자연) 과학센터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37	7차	충남	논산시	논산시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서울	찾아오는
138	7차-수시	충남	부여군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39	7차-수시	경기	성남시	성남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및 복합개발사업	서울	찾아오는
140	6차-수시	전남	남원	제94회 춘향제	서울	찾아오는
141	7차-수시	인천	서구청	장애인 행복드림타운 건립 사업	서울	찾아오는
142	7차-수시	서울	본청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서울	찾아오는
143	8차	충북	충주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144	7차-수시	전남	여수시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서울	찾아오는
145	7차-수시	전남	순천시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사업	서울	찾아오는
146	7차-수시	전남	구례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	서울	찾아오는
147	7차-수시	전남	장성	한국사찰 음식쿠킹 클래스 거점화	서울	찾아오는
148	7차-수시	충남	본청	충남 천안 5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관련 사업	서울	찾아오는
149	7차-수시	경남	거창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150	7차-수시	전남	곡성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151	7차-수시	강원	본청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건립사업	원주	찾아오는
152	7차-수시	경북	구미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서울	찾아오는
153	8차	경기	양주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54	7차-수시	전남	해남군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 사업	서울	찾아오는
155	7차-수시	전남	신안군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사업	서울	찾아오는

순번	차수	시도	시군구	사업명	장소	문의유형
156	7차-수시	전북	전주	전북권역 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연계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57	7차-수시	전북	본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58	8차	경기	성남시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서울	찾아오는
159	8차	전남	여수시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서울	찾아오는
160	8차-수시	경북	김천시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사업	서울	찾아오는
161	2차 교육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62	2차 교육	경북	포항시	북부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서울	찾아오는
163	2차 교육	서울	본청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서울	찾아오는
164	2차 교육	경기	성남시	성남시 박물관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65	2차 교육	경기	평택	반려동물 파크 조성	서울	찾아오는
166	2차 교육	경북	영주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67	2차 교육	강원	속초	속초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서울	찾아오는
168	2차 교육	강원	화천	사내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69	2차 교육	경북	본청	미디어아트뮤지엄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70	2차 교육	서울	동대문구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서울	찾아오는
171	2차 교육	대구	수성구	수성구 신청사 건립사업	서울	찾아오는
172	2차 교육	경기	가평군	가평군 보건의료원 신축 사업	서울	찾아오는
173	8차-수시	대전	본청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2단계 체육시설건립	서울	찾아오는

2) 지방자치단체별 컨설팅 신청 현황

◆ 지자체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 대상 컨설팅 건수가 많은 비중(20.2%)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16.2%)과 전남(13.9%) 순으로 컨설팅 수행함

◇ 컨설팅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현황

시·도		시군구 등	컨설팅 건수(%)	
1	서울	본청(6), 동대문구(2), 노원(4), 영등포구(2)	14	8.1
2	부산	본청(3), 동래구(1), 연제구(1)	5	2.9
3	대구	본청(2), 수성구(2)	4	2.3
4	인천	본청(1), 서구청(1)	2	1.2
5	광주	본청(1)	1	0.6
6	대전	본청(4), 서구(2)	6	3.5
7	울산	울주(1), 중구(1)	2	1.2
8	세종	-	0	0.0
9	경기	본청(6), 가평군(10), 고양(1), 부천(3), 성남(7), 시흥(1), 안산(3), 안양(1), 양주(3), 여주(2), 오산(3), 평택(1), 화성(3)	35	20.2
10	강원	본청(6), 가평군(10), 고양(1), 부천(3), 성남(7), 시흥(1), 안산(3), 안양(1), 양주(3), 여주(2), 오산(3), 평택(1), 화성(3)	28	16.2
11	충북	단양(1), 옥천(1), 제천(1), 진천(2), 청주(2), 충주(1)	8	4.6
12	충남	본천(6), 공주(1), 금산(1), 논산(1), 부여(2), 천안(1), 서산(1), 아산(1)	14	8.1
13	전북	본청(1), 부안(1), 임실(1), 정읍(1), 전주(2)	6	3.5
14	전남	본청(1), 곡성(1), 광양(1), 구례(2), 남원(2), 남해(1), 목포(1), 보성(4), 순천(3), 신안(2), 여수(2), 장성(1), 함평(1), 해남(2)	24	13.9
15	경북	본청(2), 경주(2), 구미(1), 김천(2), 김해(1), 영주(1) 포항(2)	11	6.4
16	경남	거창(1), 진주(5), 창원(3)	9	5.2
17	제주	본청(1), 제주시(1), 서귀포시(1) 제주개발공사(1)	4	2.3
합계			173	100%

◇ 컨설팅 방식별 수행 현황

구분	수행 건수(건)
찾아가는(LIMAC > 지자체)	20
찾아오는(지자체 > LIMAC)	148
온라인	5
합계	173

01

◆ 2023년 컨설팅 수행률은 컨설팅 수행 계획(정기 8차, 차수별 5건 이내, 총 40건) 대비 432.5%를 달성함

○ 정기 차수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전체 수행건수 중 71%(123건)가 '수시 및 기타'로 컨설팅 수행이 이루어졌음

○ "찾아가는 컨설팅"은 강릉, 보성, 진주, 태백에서 수행되었으며, 총 20건의 컨설팅을 수행함

- 또한 경기(49%)와 강원(62%)지역은 최근 3년간 컨설팅 문의가 증가함

○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의뢰시기 전 컨설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일 사업으로 2번 이상 컨설팅 수행한 사업은 21건으로 나타남

◇ 컨설팅 진행 현장 사진

01

◇ 컨설팅 진행 현장 사진

3) 지방자치단체별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TOM(탐)나는 컨설팅에는 총 173건의 사업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 이 중 282명의 참석자가 설문조사에 응답함

○ 컨설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 방식과 컨설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서술식으로 문의

○ 기존 LIMAC의 TOM(탐)나는 컨설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9.9%(56명)에 불과하며 처음으로 LIMAC의 컨설팅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80.1%(226명)를 차지함

○ 이러한 설문 응답 결과를 볼 때, 컨설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기타의견사항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 컨설팅 만족도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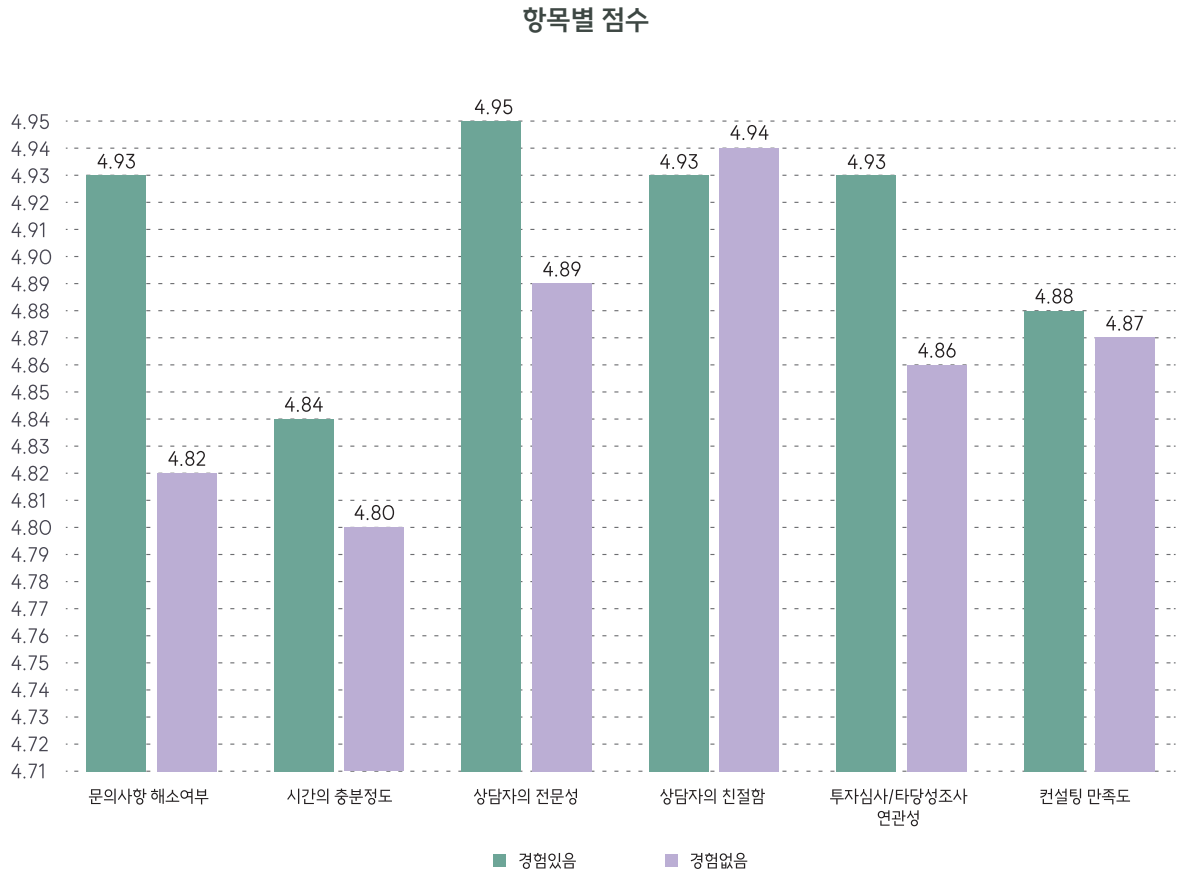

문항 (5점 만점)	전체 (282명)	LIMAC 컨설팅 참여 경험	
		있음 (56명)	없음 (226명)
(1) 컨설팅을 통해 문의 사항이 해소되었다	4.84	4.93	4.82
(2) 컨설팅 시간은 충분하였다	4.82	4.84	4.80
(3) 컨설팅 상담자는 충분한 전문성이 있었다	4.90	4.95	4.89
(4) 컨설팅 상담자는 친절하였다	4.95	4.93	4.94
(5) 컨설팅 프로그램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4.88	4.93	4.86
(6) 컨설팅에 대해 만족한다	4.88	4.88	4.87
(7) 향후 TOM(탐)나는 컨설팅을 다시 신청할 의향이 있다	4.91	4.93	4.90

◆ 주요 설문조사 결과

○ 문의 사항의 해소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84.0%가 문의 사항이 '매우 해소'되었다고 응답, 이어 '해소되었다'에 16.0%가 응답하여 TOM(탐)나는 컨설팅이 지방자치단체의 갈증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컨설팅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

- 컨설팅 시간은 60~90분 정도로, 전체 응답자 중 82.3%가 '매우 그렇다', 16%가 '그렇다',1.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98.2%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문의사항 해소 및 컨설팅 시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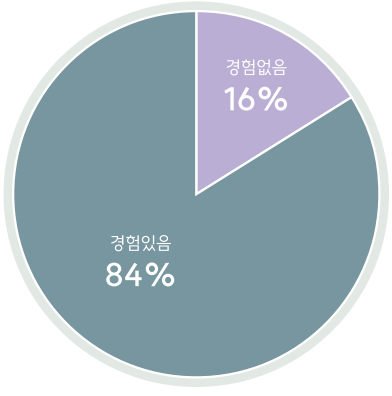

문의사항 해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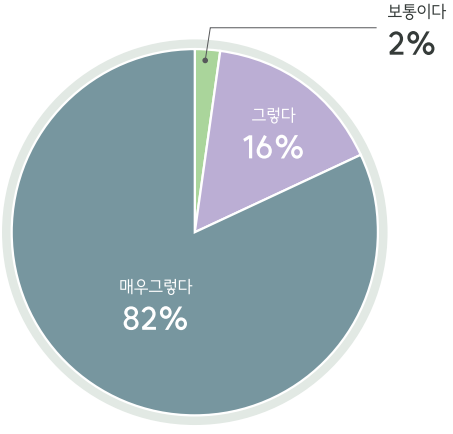

컨설팅 시간 만족도

○ 컨설팅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응답 결과
- 컨설팅 진행 시간은 의뢰 사업당 배정시간이 60~90분 내외이나, 사전 공문 접수방식을 통해 지자체의 의뢰 사업을 검토함에 따라 심도 있는 컨설팅이 가능하게 됨
- 이러한 진행방식에 따라 컨설팅에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100%(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포함)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응답하였음

○ 컨설팅 상담자의 친절성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94.7%가 '매우 그렇다', 4.3%가 '그렇다',1.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98.9%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
- 전체 응답자 중 88.3%가 '매우 그렇다', 11%가 '그렇다',0.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99.3%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컨설팅 상담자 전문성 및 친절도, 컨설팅 교육내용 충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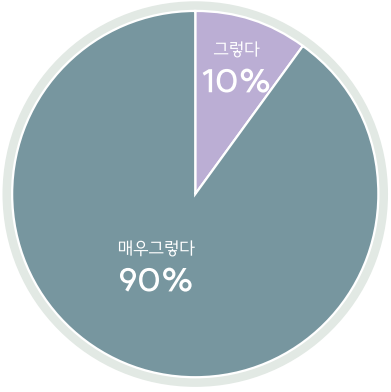

컨설팅 상담자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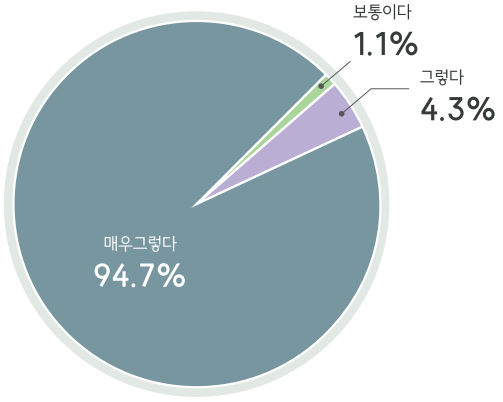

컨설팅 상담자 친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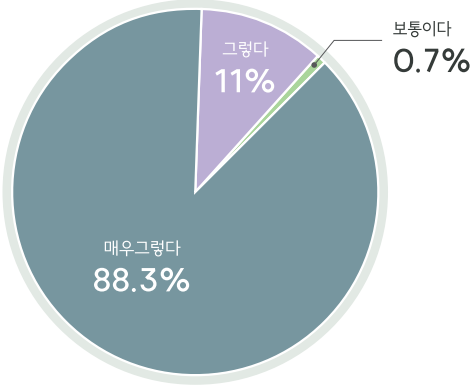

교육내용 충실도

01

○ TOM(탐)나는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87.6%가 '매우 그렇다', 11.7%가 '그렇다',0.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99.3%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향후 찾아오는 컨설팅 신청 의향
- 전체 응답자 중 91.1%가 '매우 그렇다', 8.2%가 '그렇다',0.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99.3%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따라서 향후에도 TOM(탐)나는 컨설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만족도 및 향후 컨설팅 신청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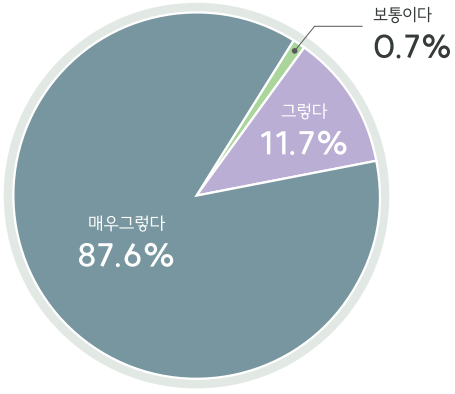

컨설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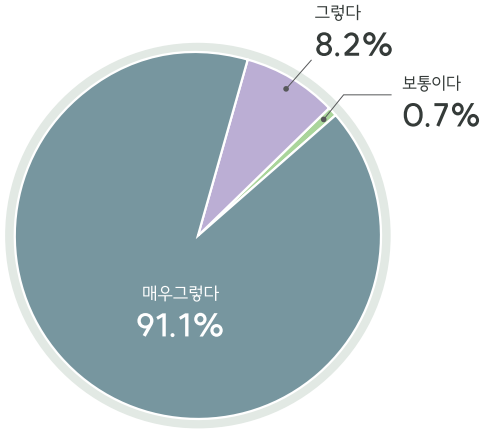

향후 컨설팅 신청 의향

○ 만족도 설문 조사 기타 의견 관련
- 컨설팅 시기와 횟수 증가 또는 수시로 컨설팅 진행 등 컨설팅 확대를 희망하는 의견
-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과정에서 컨설팅 내용이 만족했다는 의견
- 일반적인 질의에 대하여 Q&A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 지속적인 컨설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02 이력관리 백서 및 경평 요약

가.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개요

◆ 투자사업 이력관리 추진배경 및 목적

○ 투자심사 통과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이 어렵고, 심사 시의 사업내용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 이에 투자심사 이후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함

- 사업계획의 변경·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지방재정법령 위배 등의 문제를 관리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

○ 2022년 이력관리는 2013~2021년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자체투자심사 통과사업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절차

○ [1단계] DB구축 > [2단계] 사업검토 > [3단계] 사업관리 단계를 거쳐 추진함

- 1단계: 행정안전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는 제출된 사업정보를 검토한 후 해당연도의 이력관리 대상사업 및 관련 핵심정보를 최종 확정함
- 2단계: 사업비 규모와 총사업비 증감 비율 및 일정지연 정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사 대상 가능성 여부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해서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함
- 3단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및 행정안전부 및 LIMAC은 이를 검토하며, 또한 차년도에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함

나. 2023년 이력관리제도 수행 현황

◆ 2023년 이력관리 대상 : 1,929건

○ 2023년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2022년 신규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준비단계 사업 289건과 2013~2021년에 통과한 추진단계 사업 1,625건으로 총 1,929건임

○ 이력관리 대상사업 중 387건은 2022년 말 기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2건은 계획 변경, 국비 미확보, 소송 등으로 인해 재심사를 받거나 사업 추진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것으로 파악됨

◇ 이력관리 대상 사업 건수

(건)

구분	합계	진행중	완료	취소·중단
2022년 신규 통과 사업 (준비단계)	304	289	2	13
2013~2021 통과 사업 (추진단계)	1,625	1,161	385	79
합계	1,929	1,450	387	92

◆ 2023년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자체관리계획 수립 검토 : 선정중

○ 2023년 이력관리 대상사업 중 추진단계 사업에서 취소·중단된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비 변동, 사업내용 변경, 사업 중단 및 지연 여부, 사업기간 변경, 감사원 지적사항, 사업관련 민원/소송/분쟁 여부,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등으로 검토한 결과 중점관리후보사업으로 총 251건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75건으로 선정함

○ 이 중 지방자치단체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점관리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

◇ 이력관리 대상 및 진행 비교

구분	2022년 이력관리		2023년 이력관리
투자사업 심사 기간	2013~2021년(9년)		2013~2022년(10년)
투자심사 구분	투자심사가 완료된 모든 사업		투자심사가 완료된 모든 사업
사업비	– 중앙투자심사 : 모든 사업 대상 – 자체심사 : 500억 원 이상 사업 대상	⇒	– 중앙투자심사 : 모든 사업 대상 – 자체심사 : 500억 원 이상 사업 대상
사업건수	1,600건		1,929건
중점관리사업 선정 수	21건		75건
자료구축	자치단체가 핵심정보 직접 입력 (별도 DB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가 핵심정보 직접 입력 (별도 DB 시스템 구축)
자가진단 기준	9개 항목 13개 세부기준		9개 항목 13개 세부기준

03 내부 지원사업 효과(내부역량강화)

가. 내부역량강화 개요

◆ **전문가 초청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 등을 고도화함으로써 LIMAC 구성원의 연구 역량 및 전문성 제고와 타당성조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LIMAC 내부역량강화는 2023년 총 11회 개최되었음**

나. 내부역량강화 관련 내부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차례 진행된 내부역량강화에 대해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함**

○ 내부역량강화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만족도 및 향후 참여 의사 정도 파악을 위한 5점 척도 방식 문항과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한 서술식 문항을 포함하였음

◆ **2023년 내부역량강화 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타당성조사와의 연관성과 강연자의 전문기술 및 지식 등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부역량강화 만족도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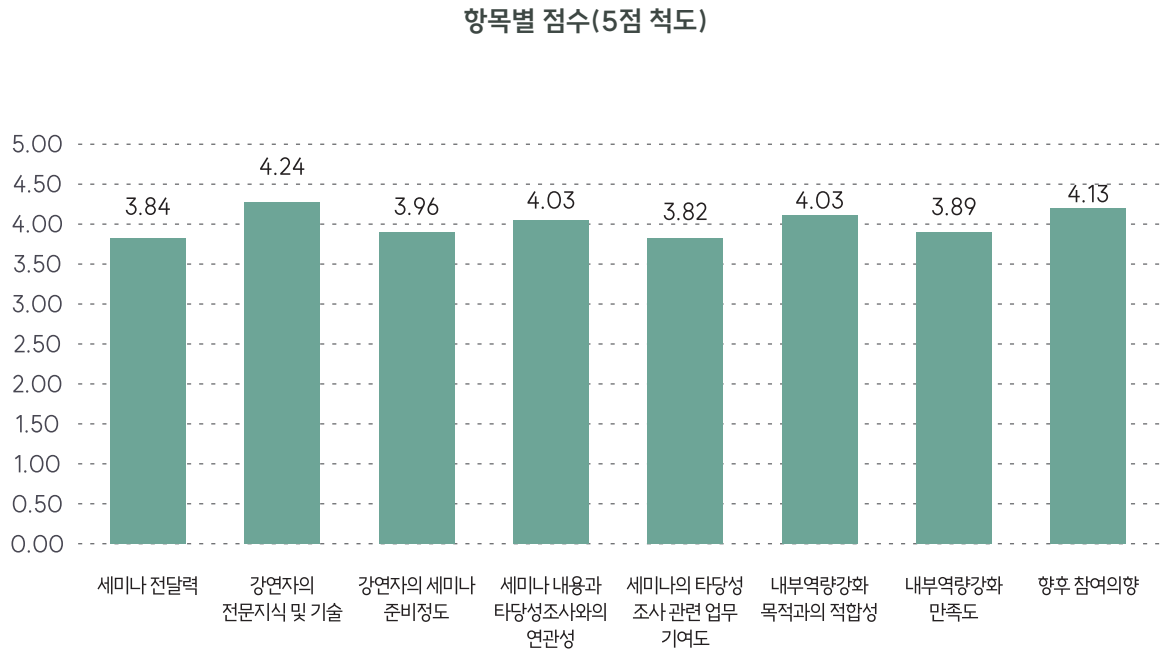

03

문항	만족도(5점 만점)
(1) 세미나 내용이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되었는가?	3.84
(2) 강연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추었는가?	4.24
(3) 강연자는 세미나 자료를 성의껏 준비하였는가?	3.96
(4) 세미나 내용은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가?	4.03
(5)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가?	3.82
(6) 세미나 내용이 참여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가?	4.03
(7) 본 내부역량강화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	3.89
(8)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부역량강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13

◆ 주요 설문조사 결과

○ 세미나 전달력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68%가 세미나 전달력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및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함

○ 강연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57%가 '만족한다', 33%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여 전체 80%가 강연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강연자의 세미나 준비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전체 76%가 강연자의 세미나 준비정도에 대해 만족(만족 56%, 매우만족 20%)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미나 전달력 및 강연자 전문지식 및 기술, 세미나 준비정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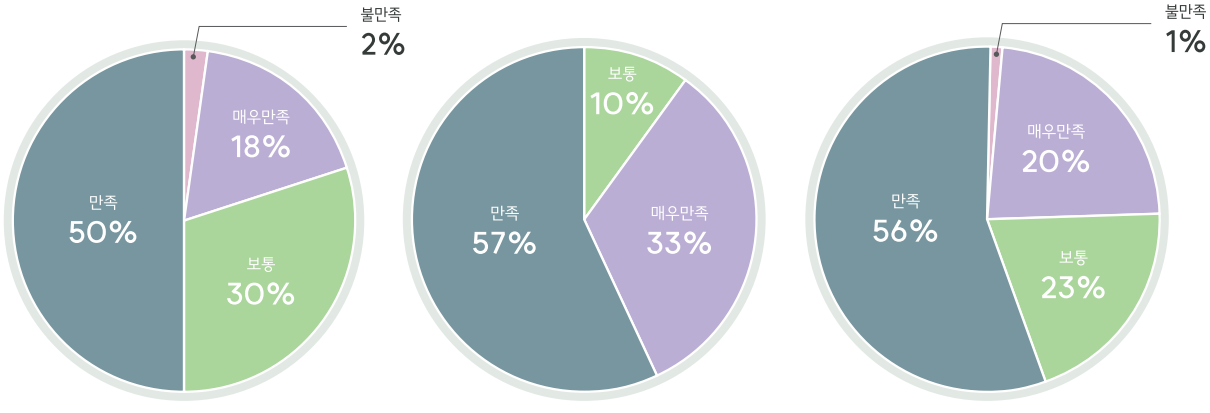

세미나 전달력 강연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 강연자의 세미나 준비정도

○ 세미나 내용과 타당성조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응답 결과

- 세미나 내용과 타당성조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9%는 만족(만족 52%, 매우만족 27%)하였다고 응답함

○ 세미나의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 기여도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45%가 '만족한다', 21%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여 전체 66%가 세미나의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 기여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부역량강화 목적과의 적합성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78%는 내부역량강화 목적과의 적합성에 대해 만족(만족 50%, 매우만족 28%)하는 것으로 응답함

◇ 세미나 내용과 타당성조사와의 연관성, 업무 기여도, 내부역량강화 목적과의 적합성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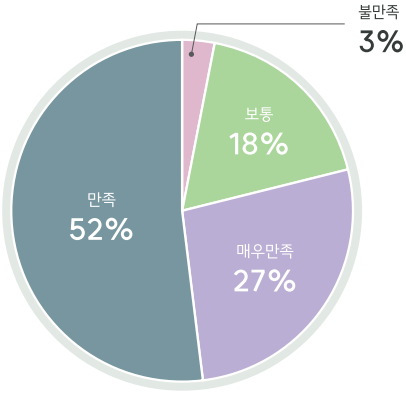

세미나 전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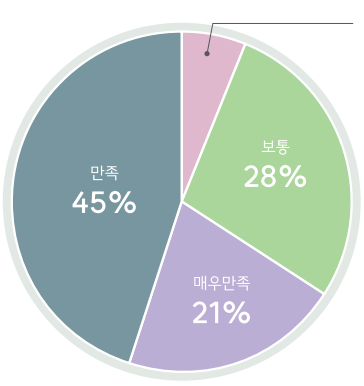

강연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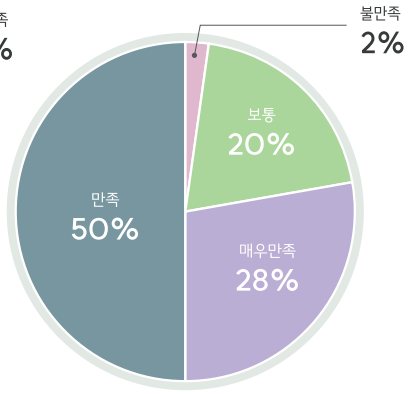

강연자의 세미나 준비정도

○ 내부역량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52%가 매우 만족하였으며,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한 20%를 포함하여 응답자 72%가 내부역량강화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함

○ 향후 내부역량강화 참여 의향

- 전체 응답자 중 91%가 향후 내부역량강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고 응답함
- 따라서 향후에도 내부역량강화를 지속적인 교육으로 진행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03

◇ 컨설팅 만족도 및 향후 컨설팅 신청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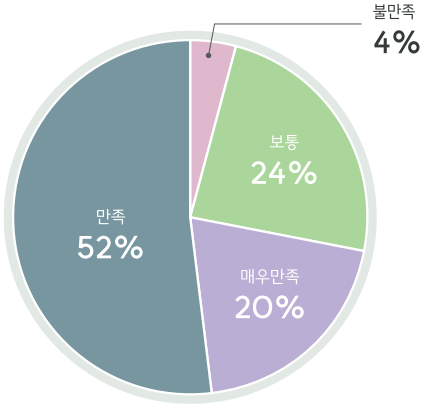

내부역량강화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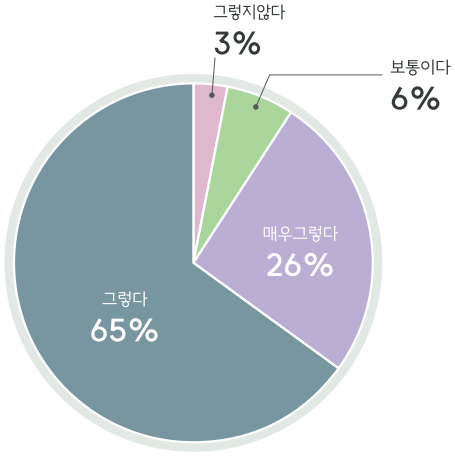

향후 참여의향

○ 만족도 설문 조사 기타 의견 관련

-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배경 및 이론, 이전수요/신규수요 적정 기준 및 적용 방안 등) 강연을 향후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관련 교육 및 강연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음
- 도로 및 교통 분야 비전공자의 도로 사업 이해도 및 분석력 제고 측면에서 도로 및 교통 분야 기초 개념 설명과 교통량 추정 방법 관련 강연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음
- PIMAC의 교통부문 지침 개정 등 변화 대비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동향 관련 강연을 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함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AC

2023 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PART

Ⅳ

부록

기관 주요연혁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일정

주요행사 (2023년 기준)

01 기관 주요연혁

2014

- 2014. 12 「지방재정법('14. 11. 29.시행)」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 2014.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설립
- 2014. 12 이상용 소장 취임

2015

- 2015. 01 타당성조사 수행
- 2015. 12 이상용 소장 이임

2016

- 2016. 01 임성일 소장 취임
- 2016. 03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 2016. 07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64호」 2조 19호)
- 2016. 11 임성일 소장 이임
- 2016. 12 이효 소장 취임

2018

- 2018. 04 이효 소장 이임
- 2018. 04 이삼주 소장 취임
- 2018. 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판식 (양재 외교센터)
- 2018. 12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재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8호)

2019

- 2019. 07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2)
- 2019.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서초동 파크빌딩 이전

01

2020

2020. 05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 고시 제2020-228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2020. 06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7호)

2020. 10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1호)

2021

2021. 06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1호)

2021. 11 조기현 소장 취임

2021.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원주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로 이전

2022

2022. 04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문기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04호)

2022. 1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판식 및 강원 원주 이전1주년 기념식

2023

2023. 01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TF

2023. 02 예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2023. 06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우발채무 관리 자문단 구성

2023. 11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 지원

2023. 12 사전검토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02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일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시·도) 투자심사 일정

일정	타당성조사		중앙(시·도) 투자심사		
	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안부	의뢰		심사
1차	1.15.	1.31.	중앙	1.31.	~3.31.
			시도	1.15.	
2차	4.15.	4.30.	중앙	4.30.	~6.30.
			시도	4.15.	
3차	7.15.	7.31.	중앙	7.31.	~9.30.
			시도	7.15	
4차	9.30.	10.15.	-	-	-

타당성조사 의뢰 및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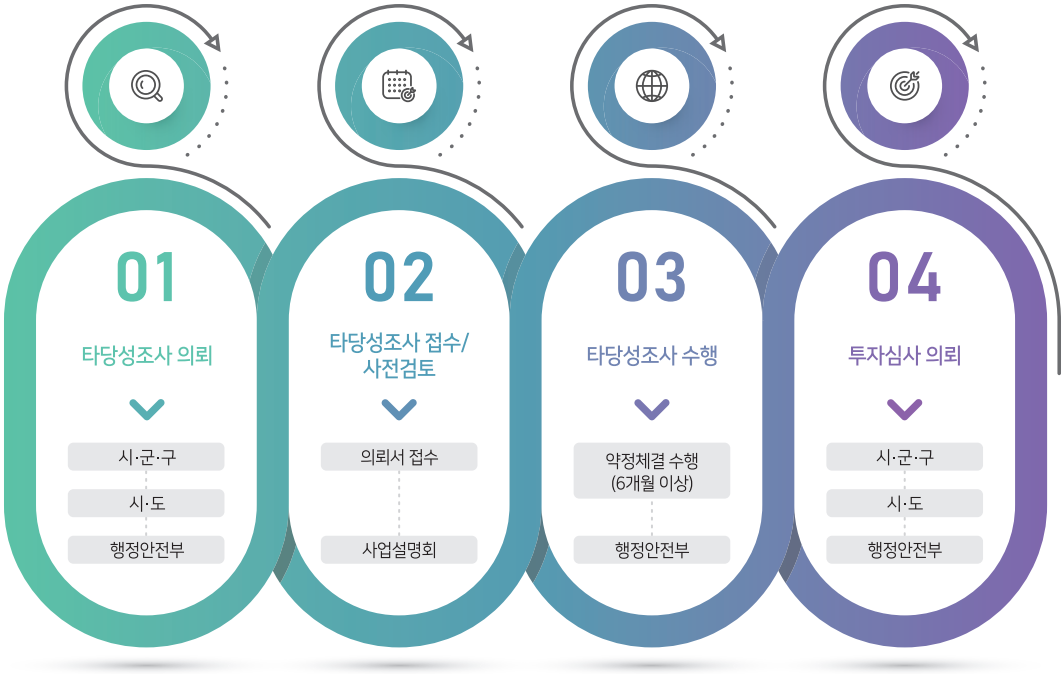

03 주요행사 (2023년 기준)

1 공무원 교육

03

2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03

3 학술대회

23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LIMAC-LOMAC

사 회
라휘문
발 표
김상기
토 론
양영철
토 론
최지은

재정긴축시기, 지방재정의 적극적 대응과제
2023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지방투자실사(LIMAC 세션)

03

4 세미나

5 내부역량강화

03

6 연구자문 위원회

7 사업설명회

202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발행처 |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9(반곡동)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6층

TEL. 033) 769-5500
FAX. 033-769-5545

limac.krila.re.kr

발행일 | 2024년 9월

발행인 | 송지영

202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9(반곡동,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6층
TEL. 033-769-5500(대표) FAX. 033-769-5545 limac.krila.re.kr